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VI)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VI)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2019.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VI)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2019.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공동연구자: 김 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료수집 및 정리: 서주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2019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유 찬

요 약

- 과거 우리나라의 금 현물시장은 주로 음성화된 거래로 이루어져 왔음
 - 따라서 정부는 금 현물시장을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2000년대 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진전시킴
 - 2010년경부터는 일반상품거래소를 설립하여 금을 비롯한 일반 상품을 장내에서 거래하게 하여 거래를 양성화하는 동시에 활성화시키고자 검토하였으나, 당장 상장시킬 만한 상품이 부족한 관계로 금 현물시장만 한국거래소(KRX)에 개설하기로 함
 - 이에 2014년 3월 24일 금 거래 양성화 및 유통체계의 단순화, 금 유통시장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시장이 개설되었음

- 2014년 금 현물시장을 개설하면서 정부는 동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함
 - 「조특법」 제126조의7 제8항은 금 거래소(금 현물시장)에 대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체 매출액 대비 거래소 이용금액의 증가분이나 매출액 대비 거래소 이용금액의 100분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조특법」 제126조의7 제9항은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 금 현물시장의 운영은 한국거래소가 주체가 되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조폐공사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거래소가 매매체결 및 청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은 금 보관 및 인출 담당, 한국조폐공사는 금 품질 인증 및 검사를 담당하고 있음
 - 거래 참여자의 경우 증권사, 금 실물사업자(생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금 거래에 참여하며, 일반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회원증권사를 통해 금 현물시장을 이용하게 됨

- KRX 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금지금 공급자인 실물사업자가 매도 주체, 개인투자자가 매수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
 - 2016년 7월부터 수급개선을 위해 도입된 LP제도로 기관의 비중이 2016년부터 시장초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함

-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항목의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약 7.5억원, 2018년 약 21억원으로 이는 다른 조세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
 - 2018년 현재 KRX 금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19.6kg, 일평균 거래금액은 8.8억원 수준이며, 연간 누적거래량으로 보면 4,778kg의 수준임
 - KRX 금 현물시장에서는 최근 3년간 국제 금 가격 증가 평균(Tenfore 환산) 대비 100.18~100.35% 수준으로 시세가 결정됨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있음
 - 한국거래소 내부자료에 따르면 KRX 금 시장 가격의 경우 장외 도매가격 대비 0.5~1.5% 정도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가장 유리한 가격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연도별 총금지금 수입은 2017년에 예외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관세면제 금지금은 2018년에 크게 증가함
 - 관세특례를 이용한 수입금이 전체 수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2017년에 2% 내외에 머물던 것이 2018년에 24.2%로 크게 증가함
 - 그러나 KRX 입고 금지금의 총수량은 2017년 2,488kg에서 2018년 2,007kg으로 오히려 감소했음을 감안하면 국내 금 공급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수입금 입고 증가일 수 있음

- KRX 금 시장은 개설 이후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유동성 확대 및 국내시장 수급 안정화
 - KRX 금 시장 개설 이후 정부의 금 현물시장에 대한 세제혜택 및 거래수수료 면제 등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실물사업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개인투자자의 금 보유량도 확대되기 시작함

- 또한 일시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 공급이 부족할 때는 KRX 금시장을 통한 수입금 공급의 확대를 통해 국내 금시장의 수급 안정화에 기여함
 - 금 시장 양성화 진전 및 질적 성장
 - 금 시장 개설 이후 2019년 6월까지 약 9,038kg이 입고되어 약 21톤(약 9,592 억원)이 거래됨에 따라 국내 금 시장의 양성화를 도모함
 - 또한 KRX 금 시장 참여 시 소액으로도 품질이 보장된 금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게도 새로운 투자 및 자산증식 수단을 제공함
 - 외환보유고 증대 효과
 - 누적 금지금 잔고량(연말 종가 기준)을 살펴보면 2018년 말 기준 4,817kg으로 KRX 금 시장 개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이는 한국은행의 2018년 말 기준 금 보유량 104.4톤 대비 4.6%에 해당하는 수치로 KRX 금 시장에 누적되는 금지금 잔고가 부수적으로 대외 지급수단의 추가 확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옴
 - 현물 기준 가격으로서의 역할
 - KRX 금시장 가격은 국제 금시세 대비 100.18~100.35%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국제 금시세 등락폭 및 추세와 거의 일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함
 - 장외시장의 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가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금 세공업자 등의 매입원가 절감에도 기여함
- 이와 같은 성과는 우리나라 금 시장의 양성화를 상당히 진전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금 시장 규모는 연간 120~150톤 정도, 음성시장의 규모는 연간 55~70톤 정도로 추정되는 데 반해, 금 현물시장에서의 연간 누적 거래량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추정 거래량의 3.2~4.8%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금 현물시장이 충분히 양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시행 후 5년제를 맞이하는 동 조세특례 조항을 통하여 금 현물시장이 충분히 양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한편으로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금 현물시장의 성장이 더딘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 공급업자들이 기존의 도매 방식으로 거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KRX 금 시장을 이용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임
 - 즉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면 대량거래가 가능하고, 인수 및 인도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며, 시장 지배력에 의한 프리미엄 가격을 수취하는 것도 가능함
 - 거래제도가 불투명할수록 시장 지배력을 가진 참여자가 유리한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함
 - 반면 장내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모니터링할 인력과 장비 등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며, 실물 금지금보다 작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금 회수도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지는 등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음
- 금 현물시장의 양성화라는 정책목표는 명분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명제임을 감안한다면, 현재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해서 당장 소득세·법인세·관세에 대한 조세특례를 폐지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함

【제1안】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은 일몰 종료하고, 관세 감면 혜택은 2년 일몰 연장하는 방안

- 관세를 면제하게 되면 국내외 금 수급상황에 따라 수입을 통한 공급량 조절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되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특례 이용 실적이 큰 관세는 유지하고, 이용 실적이 미미한 나머지 두 세목의 혜택은 폐지하는 방안
- 5년의 기간이 현물시장 양성화의 충분한 기간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2차례의 일몰 연장 이후에도 소득·법인세 감면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이용도를 감안하여 조세특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 세목의 혜택을 폐지
- 금의 밀수는 국내외 금 가격 차이에 따른 예상 수익과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에 따른 예상 비용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최소한 일차적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는 밀수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FTA 체결국가가 늘어난다고 하여도 국가별 수급 상황에 따라 항상 FTA 국가에서만 금을 수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금에 대한 관세 면제는 수입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일조할 것임

【제2안】 소득세 감면 혜택은 일몰 종료하고, 법인세와 관세 감면 혜택은 2년 일몰 연장하는 방안

- 제1안과 제2안의 차이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 조항을 연장할 것인가의 문제임
 - 법인세 감면 혜택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나, 현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법인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법인세 감면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 현재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LS-Nikko나 아예 적격공급업체에서도 빠져 있는 고려아연 등의 대형 공급업체(법인)에 유인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조특법」 제122조의4에서 금 사업자와 스크랩 등 장외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하여 현물시장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 주는 특례 조항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한 만큼, 장내거래에서 법인세 특례 조항을 폐지한다면 세제 유인에 따라 장내거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결론적으로 5년의 기간이 현물시장의 양성화에 충분한 기간인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으나, 오랜 기간 장외 음성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던 금의 거래를 단기간에 양성화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장내 금 현물시장이 활성화된 나라는 중국과 터키 정도를 들 수 있다는 것은 장외에서도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굳이 장내거래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 일단 우리나라는 거래 관행과 세무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장내거래를 통한 양성화 목표를 설정하였으므로 현 단계에서 동 목표를 폐기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됨

- 세계적으로 금 현물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로는 중국과 터키 정도를 들 수 있음
 - 중국은 법률에 의하여 금 현물거래는 상하이황금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음
 - 터키도 법률에 의하여 거래소 회원에게만 금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국가와 비교한다면 KRX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조건하에서 금 현물시장 양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종로’로 지칭되는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 여전히 장내거래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며, 장외거래는 장내거래와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장내거래를 활성화시킬 조치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협력할 유인이 적다고 할 수 있음
 - 만일 중국만큼은 아니더라도 터키에 버금가는 정도의 양성화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금 현물시장의 양성화는 세제지원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님
- 따라서 현물시장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현행 조세특례를 부분적으로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2년의 연장기간 동안 효과적인 세제지원 강화를 포함한 거래제도 자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2년의 일몰 연장기간 중에 관련 부처와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든다면 다음과 같음
 - 부가가치세의 조기 환급
 - 24시간 거래 제도의 도입
 -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의 참여 유도

목 차

I. 서론	13
II. 우리나라 금 현물시장 연혁과 현황	17
1. 금 현물시장 개설 배경 및 개요	19
2. 금 현물시장 현황	20
가. KRX 금 시장 구조	20
나. KRX 금 시장 거래제도	25
다. KRX 금 시장 현황	26
라. KRX 금 시장 개설 이후 성과	35
III. 금 투자 대체시장과의 비교	39
1. 골드뱅킹 및 금 ETF	41
가. 골드뱅킹(gold banking)	41
나. 금 신탁 및 금 ETF	44
다. KRX 금 시장과의 비교	49
2. KRX 금 선물시장	50
IV. 금 현물시장 및 금 과세 해외사례	53
1. 해외 금 시장	55
가. 2019년 세계 금 시장 현황	55
나. 주요국의 금 보유고(reserve) 추이	61
다. 터키 금 현물시장 사례	65
2. 금에 대한 과세제도	78
가. 금 거래와 금 과세 개요	78

나. 주요국 금 과세 현황	82
다. 미국 귀금속 코인 및 금지금의 실체적 소유에 대한 조세	83
라. 세계 귀금속 과세제도 및 품질인증제도	85
3. 정책적 시사점	88
가. 터키 사례	88
나. 중국 사례	89
V. 금 현물시장 조세특례 제도	93
1. 제도 연혁	95
2. 제도 내용	96
3. 과세특례 금액 추이	99
4. 현행 제도의 문제점	102
가.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102
나. 장외거래와의 비교	104
다. 세제혜택 산출 문제	107
5. 효과성에 대한 평가	107
VI. 정책 대안 및 결론	113
1. 정책 대안	115
2. 맺는 말	118
참고문헌	120
부 록	123

표 목 차

<표 II-1> KRX 금 시장 회원 리스트	22
<표 II-2> KRX 금 시장 참가자 리스트	23
<표 II-3> 수입금 적격 리스트	24
<표 II-4> 일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 추이	27
<표 II-5> 2019년 KRX 금 시장 월별 일평균 거래량 현황	28
<표 II-6> 종목별 일평균 호가 및 체결 건수·수량 추이	28
<표 II-7> KRX 금 시장과 국제 금 시세 현황(금 현물 1kg 기준)	29
<표 II-8> KRX 금 시장의 금지금 누적 잔고량 현황	30
<표 II-9> 투자자별 매도 및 매수 거래 비중 현황	31
<표 II-10> KRX 금 시장 연도별 금지금 입고 현황	32
<표 II-11> KRX 금 시장 출고량 현황	33
<표 II-12> 연도별 금 및 금지금 수입 금액 추이	34
<표 III-1> 시중은행별 수시입출금식 금 통장 비교	42
<표 III-2> 시중은행별 골드바 매매거래 비교	43
<표 III-3> 금 신탁 상품 비교	45
<표 III-4> 국내 금 ETF 상품 비교	48
<표 III-5> KRX 금 시장과 다른 금 투자 상품 비교	50
<표 III-6> 금 선물 일평균 거래량 현황	51
<표 IV-1> 주요국의 금 보유고 추이	62
<표 IV-2>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대비 금 보유고 비중 추이	64
<표 IV-3> 세계 금 거래소 거래 현황	66
<표 IV-4> 세계 공인 금 보유량 현황(2019년 6월 말 기준)	67
<표 IV-5> 터키 BIST 금 거래량: 2013~2018년	72
<표 IV-6> 터키 BIST 귀금속 거래량	73

<표 IV-7> 터키 BIST 리라화 사용 금 거래 현황(2019년)	73
<표 IV-8> 터키 BIST 미달러화 사용 금 거래 현황(2019년)	74
<표 IV-9> 터키 BIST 유로화 사용 금 거래 현황(2019년)	74
<표 IV-10> 터키 BIST 금 거래 현황(2019년)	75
<표 IV-11> 터키 BIST 금 거래금액	76
<표 IV-12> 터키 BIST 귀금속 거래금액	76
<표 IV-13> 터키 BIST 금 거래건수	77
<표 IV-14> 터키 BIST 귀금속 거래건수	78
<표 IV-15> 주요국 금 과세 개요	82
<표 V-1> KRX 금 시장 개설 연혁	95
<표 V-2> 금지금 소득세 과세특례 금액	99
<표 V-3> 금지금 법인세 과세특례 금액	99
<표 V-4> 연도별 금지금 임치 및 반환 추이	100
<표 V-5> 금 현물시장 금지금 관세 감면 현황(관세청 신고 기준)	101
<표 V-6> KRX 금 시장 수입금 입고량 추이	101
<표 V-7> 관세 면제금액 현황(한국거래소 실거래 기준)	102
<표 V-8> 금지금 공급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유형	102
<표 V-9> 협의대량매매 신청 요건	106
<표 V-10> KRX 금 시장 연도별 협의대량매매 현황	106
<표 V-11> 조세지출 규모	107
<표 V-12> KRX 금 시장 거래 현황	108
<표 V-13> KRX 금 시장 거래 참여자	108
<표 V-14> 금지금 수입량 및 KRX 입고량 추이	109
<부표 1> KRX 금 시장 규정 및 세칙개정 연혁	125

그림 목 차

[그림 II-1] KRX 금 시장 거래구조 및 매매 흐름	20
[그림 II-2] KRX 금 시장 개설 이후 월평균 거래량 및 금 시세 추이 (금 현물 1kg 기준)	30
[그림 IV-1] 금 및 글로벌 자산의 성과	56
[그림 IV-2] 지역별 금 ETF 월 유출입량 및 금 가격 추이(2018년 12월 31일 기준) ...	57
[그림 IV-3]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순매수 포지션	58
[그림 IV-4] 세계 금 가격 추이	58
[그림 IV-5] 런던과 상하이 금 가격 추이	59
[그림 IV-6] 세계 금 시장 수요 및 금 가격 추이: 2016~2019년	60
[그림 IV-7] 세계 금 시장 공급 및 금 가격 추이: 2016~2019년	61
[그림 V-1] 장외거래 시 금지금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환급절차 ...	103
[그림 V-2] 장내거래 시 금지금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환급절차 ...	104

I. 서론



I. 서론

- 과거 우리나라의 금 현물시장은 주로 음성화된 거래로 이루어져 왔음
 -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 현물시장을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2000년대 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진전시켜 왔음
 - 2010년경부터는 일반상품거래소를 설립하여 금을 비롯한 일반 상품을 장내에서 거래하게 하여 거래를 양성화하는 동시에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음
 - 그러나 일반상품거래소에 상장할 후보 상품에 대하여 유통 구조라든지 시장 가격 결정 기제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일차적으로 장내 거래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기 어려웠음

- 그러나 금 현물시장 양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상장 상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도의 일반상품거래소를 설립하기보다는 한국거래소(KRX)에 금 현물시장을 개설하기로 함
 - 그 결과 2014년 한국거래소에 금 현물시장이 개설됨
 - 종로를 비롯한 귀금속업계에서는 그 때까지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금 거래가 양성화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음

- 금 현물시장을 개설하면서 정부는 동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함
 - 「조특법」 제126조의7 제8항은 금 거래소(금 현물시장)에 대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체 매출액 대비 거래소 이용금액의 증가분이나 매출액 대비 거래소 이용금액의 100분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조특법」 제126조의7 제9항은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 KRX에 금 현물시장 개설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금 현물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동 조세특례 이용 금액도 다른 조세특례 조항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실정임
 - 2014년 1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2년의 일몰 기간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2번 연장되어 현재에 이르는 동 조항은 2019년 말에 다시 일몰이 도래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동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일몰 연장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

Ⅱ. 우리나라 금 현물시장 연혁과 현황



II. 우리나라 금 현물시장 연혁과 현황

1. 금 현물시장 개설 배경 및 개요

- 국내 금 거래시장의 경우 유통량의 대부분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음
 - 금 거래의 비정상적인 유통 및 탈세 거래 등이 만연한 결과, 금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신뢰가 저하됨에 따라 금 시장 구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국내 금 유통규모는 연간 100~110톤 내외로 추정되며 이 중 음성거래 규모는 약 55~70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¹⁾
 - 음성거래가 만연함에 따라 저품질 금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금에 대한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게 됨
 - 또한 순도 등 품질이 공인된 금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금을 포함한 귀금속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함
 - 이에 2014년 3월 24일 정부에서는 금 거래 양성화 및 유통체계의 단순화, 금 유통시장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 시장을 개설하였음²⁾
- 금 현물시장의 개설 목적은 현물시장 개설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음성화된 금 거래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또한 안정적인 수급시장 확보를 통해 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액으로 편리하게 금에 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자산운용 폭이 넓어지고 금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1) 이는 정재호(2007) 자료 중 연간 국내 금 유통규모를 120~150톤으로 추정한 값과 한국거래소에서 2018년 기준 업계 면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정한 값이며, 한국거래소 내부 자료를 인용하였음

2) 2010년 6월 23일, 관계부처(기재부, 지경부, 금융위 등) 합동으로 상품(금)거래소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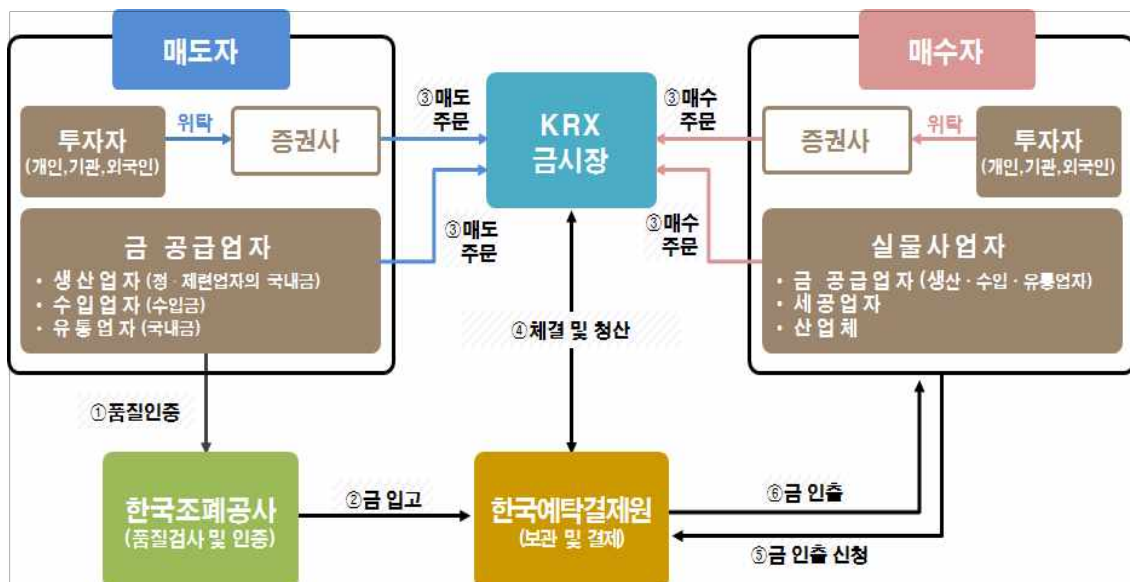
2. 금 현물시장 현황3)

가. KRX 금 시장 구조

- 금 시장의 운영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조폐공사가 담당하고 있음
 - 금 현물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주체가 되어 매매체결 및 청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은 금 보관 및 인출 담당, 한국조폐공사는 금 품질 인증 및 검사를 담당하고 있음
 - 거래 참여자의 경우 증권사, 금 실물사업자(생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금 거래에 참여하며, 일반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회원증권사를 통해 금 현물시장을 이용하게 됨

- KRX 금 시장의 거래 구조는 다음 [그림 II-1]과 같음
 - KRX 금 시장 회원인 금지금 공급사업자가 금지금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을 임치한 후 KRX 금 시장에서 매도하는 구조로 거래되고 있음
 - 거래 가능한 금은 KRX가 사전에 지정한 국내금과 수입금만 거래가 가능함

[그림 II -1] KRX 금 시장 거래구조 및 매매 흐름



자료: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3)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및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 국내금의 경우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생산한 금지금이 해당되며, 수입금의 경우 적격금지금 수입업자가 수입한 수입금 적격리스트상의 금지금이 해당됨
- KRX 금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으로는 일반회원과 자기매매회원이 있음
 - 일반회원의 경우 자기매매뿐 아니라 수탁도 가능한 반면 자기매매회원은 자기자본을 이용한 거래만 가능하며 수탁이 불가능함
 - 금융투자업자 또는 실물사업자의 경우 회원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및 자기매매회원으로 참여가 가능함
 - 일반회원인 실물사업자의 경우 주문만 수탁이 가능하며,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또는 선물사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참여가 가능함
 - 실물사업자에 대한 일반회원 요건은 재무요건, 물적요건, 인적요건, 사회적 신용요건으로 나눌 수 있음
 - 재무요건: 자기자본(60억원 이상), 부채비율(100% 이하)
 - 물적요건: 매매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산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수탁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자체 구비하거나 임차도 가능함
 - 인적요건: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충분해야 함
 - 사회적 신용요건: 회원가입 신청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어야 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일반회원 요건은 금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함
 - 실물사업자에 대한 자기매매회원 요건은 영업활동기간, 매출액, 사회적 신용을 고려하여야 함
 - 영업활동기간: 금 또는 금 제품 관련 영업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하며, 이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증빙이 가능해야 함
 -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납세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사회적 신용: 회원가입 신청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어야 함
 - 현재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는 일반회원은 KB증권(주), NH투자증권(주), 대신증권(주), 미래에셋대우증권(주), 삼성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유안타증권(주), 키움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주)로 총 10개 증권사가 이에 해당됨

- 자기매매회원은 LS-Nikko 동제련(주)을 포함하여 총 36개 업체이며, 이 중 제정련 관련 업체는 7개, 유통업체는 27개, 수입업체는 2개임

<표 II -1> KRX 금 시장 회원 리스트

일반회원			자기매매회원		
회사명	가입일	업종	회사명	가입일	업종
KB증권(주)	2014. 3. 18	증권	LS-Nikko 동제련(주)	2014. 10. 15	제정련
NH투자증권(주)	2014. 3. 18	증권	(주)가은사	2014. 3. 24	유통
대신증권(주)	2014. 3. 18	증권	고려아연(주)	2014. 3. 24	제정련
미래에셋대우증권(주)	2014. 3. 18	증권	(주)골드나라	2015. 6. 12	유통
삼성증권(주)	2014. 3. 18	증권	(주)골드몬드	2016. 1. 28	유통
신한금융투자(주)	2014. 3. 18	증권	(주)골드뱅크	2014. 3. 24	유통
유안타증권(주)	2014. 7. 16	증권	(주)골드앤드실버	2014. 3. 24	유통
키움증권(주)	2014. 3. 18	증권	(주)국제금 거래소	2014. 3. 24	유통
하나금융투자(주)	2014. 8. 27	증권	귀금속닷컴(주)	2014. 3. 24	제정련
한국투자증권(주)	2014. 3. 18	증권	(주)금과은현물거래소지산	2016. 1. 28	유통
			뉴대상골드(주)	2014. 3. 24	유통
			대산귀금속	2016. 3. 24	유통
			대성금속(주)	2014. 3. 24	제정련
			대한골드 주식회사	2017. 11. 6	유통
			(주)대호브리아노	2014. 3. 24	유통
			(주)명성시계	2015. 8. 17	유통
			(주)보스톤메탈	2014. 3. 24	수입
			삼덕금속(주)	2014. 3. 24	제정련
			(주)삼성골드	2017. 5. 25	유통
			(주)삼성금 거래소	2014. 3. 24	유통
			삼성제니스골드	2015. 9. 17	유통
			성일하이텍(주)	2014. 4. 10	제정련
			순금세상 주식회사	2018. 5. 21	유통
			(주)췌그네	2014. 3. 24	유통
			아시아골드(주)	2015. 8. 17	유통
			(주)이레나	2014. 4. 10	유통
			(주)종로금1번가	2019. 2. 26	유통
			(주)종로금은	2015. 8. 31	유통
			주식회사 에스엠금 거래소	2017. 4. 26	유통
			주식회사 해든금 거래소	2019. 2. 11	유통
			지오주얼리	2019. 2. 11	유통
			(주)풍산화동양행	2014. 3. 24	제정련
			(주)한국귀금속거래소	2014. 3. 24	유통
			(주)한국금 거래소	2014. 3. 24	수입
			(주)한국금 거래소쓰리엠	2014. 3. 24	유통
			(주)한국표준골드바	2016. 3. 30	유통

자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또한 KRX 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적격생산업자(3개), 적격수입업자(8개), 적격유통업자(2개)가 있음
-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생산업자(적격생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금을 거래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거래소 심사 및 한국조폐공사의 기술요건 검사 등을 통해 선정됨
 - 적격생산업자는 지정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금지금 등 귀금속 관련 제련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3사업연도 금지금 등 귀금속의 연 평균 생산량이 1,000kg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업체여야 함
 - 또한 금지금의 생산능력 및 생산 공정, 품질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한국조폐공사가 심사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제품인정기구(Korea Accreditation System: KAS)의 인정방식에 따름
 -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 수입업자(적격수입업자)가 수입한 금에 대해 거래가 가능함
 - 지정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금지금의 수입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연도 100억원 이상·3년 평균 80억원 이상의 매출규모를 가지고 있고,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업체여야 함
 - 수입금의 경우에도 적격수입업자가 수입하는 모든 금지금의 거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지정하는 해외의 특정 금 생산업자가 생산한 수입금에 한하여 거래가 허용됨(<표 II-3> 참조)

<표 II -2> KRX 금 시장 참가자 리스트

적격생산업자		적격수입업자		적격유통업자	
회사명	지정일	회사명	지정일	회사명	지정일
LS-Nikko 동제련(주)	2013. 10. 31	(주)세그네	2017. 12. 4	(주)삼성금 거래소	2014. 12. 6
대성금속(주)	2013. 12. 3	(주)한국금 거래소	2015. 11. 2	(주)한국금 거래소쓰리엠	2014. 12. 6
삼덕금속(주)	2013. 12. 3	주식회사 선학골드유	2017. 12. 6		
		(주)삼성금 거래소	2013. 12. 3		
		(주)풍산화동양행	2013. 12. 3		
		(주)한국금 거래소쓰리엠	2013. 12. 3		
		(주)골드앤드실버	2013. 12. 3		
		(주)보스톤메탈	2013. 12. 3		

자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유통업자(적격유통업자)가 적격생산업자로부터 장외매입하거나 고금 등을 수집하여 위탁생산한 금에 대해 거래가 가능함
- 지정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금지금 등 귀금속의 유통 등과 관련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3사업연도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함

<표 II -3> 수입금 적격 리스트

생산자명	국가명	지정일
Asahi Refining Canada Limited	캐나다	2019. 1. 2
Japan Mint	일본	2019. 1. 2
JX Nippon Mining & Metals Co., Ltd	일본	2019. 1. 2
Nihon Material Co. Ltd	일본	2019. 1. 2
Asahi Refining USA Inc.	미국	2017. 8. 1
Istanbul Gold Refinery	터키	2017. 8. 1
PT Aneka Tambang(persero) Tbk(Logam Mulia)	인도네시아	2017. 8. 1
Allgemeine Gold - und Silberscheideanstalt AG	독일	2014. 9. 29
Chimet S.p.A.	이탈리아	2014. 9. 29
Aurubis AG	독일	2014. 9. 29
Navoi Mining and Metallurgical Combinat(NMMC)	우즈베키스탄	2014. 3. 24
Ishifuku Metal Industry Co Ltd	일본	2014. 3. 24
Heraeus Precious Metals GmbH & Co. KG	독일	2014. 3. 24
Argor-Heraeus S.A.	스위스	2014. 3. 24
Asahi Pretec Corp.	일본	2014. 3. 24
Heraeus Ltd Hong Kong	홍콩	2014. 3. 24
Metalor Technologies(Hong Kong) Ltd.	홍콩	2014. 3. 24
Metalor Technologies S.A.	스위스	2014. 3. 24
Metalor USA Refining Corp.	미국	2014. 3. 24
Mitsubishi Materials Corp.	일본	2014. 3. 24
Mitsui Mining & Smelting Co., Ltd.	일본	2014. 3. 24
Pamp SA	스위스	2014. 3. 24
Rand Refinery(Pty) Ltd.	남아공	2014. 3. 24
Royal Canadian Mint	캐나다	2014. 3. 24
Sumitomo Metal Mining Co., Ltd.	일본	2014. 3. 24
Tanaka Kikinzoku Kogyo K.K.	일본	2014. 3. 24
Valcambi S.A.	스위스	2014. 3. 24
Western Australian Mint (T/a The Perth Mint)	호주	2014. 3. 24
Metalor Technologies Singapore Pte Ltd	싱가폴	2014. 3. 24
Matsuda Sangyo Co., Ltd	일본	2014. 3. 24
Tokuriki Honten Co., Ltd	일본	2014. 3. 24

자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나. KRX 금 시장 거래제도⁴⁾

- KRX 금 시장의 매매거래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1항에 따른 금지금으로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금괴(덩어리 형태),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벽돌모양의 직육면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
 - 순도 99.99%
 - 중량 1kg, 100g
 - 표면에 금지금 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 순도, 중량, 제조번호 등이 각인되어 있을 것

- KRX 금 시장의 매매거래는 단일가매매방식과 접속매매방식으로 이루어짐
 - 단일가매매는 일정 시간 동안 접수한 모든 매도 및 도수 호가를 동시에 집중하여 가장 많이 체결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매매체결하는 방식을 말하며, 시가와 종가 및 매매거래 중단 이후 재개 시 최초가격 결정에 적용됨
 - 접속매매는 매매체결이 가능한 호가가 유입되는 즉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으로 단일가매매 이외 매매시간의 가격 결정에 적용됨

- 매매거래단위 및 호가수량단위는 1g이고 호가가격단위는 10원으로 하며 가격은 1g당 원화로 표기함
 - 호가수량이 1g 단위이므로 소량의 금액으로도 금의 매매거래가 가능함
 - 단 KRX 금 시장에서는 가격 및 수량을 지정하는 지정가호가만 가능하며 1호가 당 제출할 수 있는 최대수량은 5,000g(5kg)임
 - 실물인출단위의 경우 종목별 인수도 단위로 1kg 종목은 1kg당 실물인출이 가능하며, 100g 종목은 100g당 실물인출이 가능함
 - 기준가격의 경우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하고 있으며 일별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pm 10\%$ 임

4) <http://regulation.krx.co.kr/contents/RGL/04/04010101/RGL04010101.jsp>(검색일자: 2019. 5. 22)의 규정제도 중 금 시장 거래제도 내용을 정리함

- 매매에 따른 결제의 경우 실물사업자 수요를 반영하여 1일 2회 결제됨
 - 매매거래개시 시점인 오전 9시에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 11시 30분에 결제, 이 외 시간에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는 오후 5시에 결제가 됨

- 금지금의 입치, 반환 및 인출의 경우 1kg 단위로만 가능하며 관련 업무는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 입치의 경우 금지금 공급사업자가 매매를 위해 보관기간에 금지금을 최초 입고하는 것이며, 반환은 해당 사업자가 매매 전 인출하는 것을 말함
 - 인출의 경우 매매거래개시 시점인 오전 9시에 체결된 거래분에 대해서는 당일 오후 1시까지 인출신청한 경우 당일 인출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인출청구일 익일부터 인출이 가능함

- KRX 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은 순도 99.99% 이상의 금만이 거래가 가능하며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생산업자와 적격수입업자만이 공급이 가능함
 - 이에 따라 품질 관리와 공급자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한국조폐공사가 품질인증기관으로 적격생산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국가표준법 및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인정방식에 준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생산공정, 품질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실사를 진행함으로써 순도 99.99% 이상의 금지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생산업체의 기술력을 평가 관리함
 - 적격생산업자가 생산한 금지금이 실제로 99.99% 이상의 순도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정방식에 준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검사를 시행함
 - 적격수입업자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해외 유명 브랜드의 금을 수입하여 KRX 금 시장에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시로 품질인증기관이 품질검사를 시행하게 됨

다. KRX 금 시장 현황

- 2014년 3월 24일 KRX 금 시장 개설 이후 2019년 6월까지의 일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4>와 같음

- KRX 금 시장 개설 이후 2019년 6월까지 총누적거래량은 20,977kg이며, 누적 거래대금은 약 9,592억원임
- 일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2019년(2019년 6월까지 기준) 약 24.4kg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한 수준이며, 2014년 대비 335.7% 증가,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9년 약 11.9억원으로 전년 대비 35.2% 증가, 2014년 대비 395.8% 증가함
- 2018년 국내 귀금속 시장 침체 및 국내 금 생산량 감소로 인해 KRX 금 시장의 금 입고량이 감소되면서 일평균 거래량이 감소하였으나, 2019년 증가 추세로 전환됨
 - 한국거래소에서는 일평균 거래량의 증가세 완화를 인지도 부족⁵⁾ 및 대형 금 생산업체의 장내시장 미참여⁶⁾를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음
- 2019년 월별 일평균 거래량을 살펴보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2018년의 감소세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보임(<표 II-5> 참조)
 - 2019년 6월 일평균 거래량은 37.4kg으로 이는 2018년 대비 약 91.8% 증가한 수치이며, 2019년 3월을 제외하고는 2018년 일평균 거래량인 19.5kg보다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음

<표 II-4> 일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 추이

(단위: kg,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¹⁾
일평균 거래량	5.6	8.9 (58.9)	17.8 (100.0)	23.1 (29.5)	19.6 (△15.1)	24.4 (24.5)
일평균 거래대금	2.4	3.8 (58.3)	8.4 (121.1)	10.6 (22.9)	8.8 (△16.7)	11.9 (35.2)
연간 누적거래량	1,055.4	2,211.3 (109.5)	4,380.1 (98.1)	5,604.1 (27.9)	4,777.7 (△14.7)	2,948.5 (-)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

1) 2019년 6월까지의 일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 수치임

자료: 한국거래소 Market data를 토대로 작성함

- 5) 거래소 금 시장 개설 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일반인들은 아직도 ‘한국금 거래소’라는 사설 금 거래업자와 혼동하는 등 유사 거래업자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6) LS-Nikko는 적격생산업자이기는 하나 직접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적격 유통업자를 통하여 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은 초기에 참여하였으나 지금은 아예 적격생산업자에서도 빠져 있음

<표 II -5> 2019년 KRX 금 시장 월별 일평균 거래량 현황

(단위: kg)

2018년 전체 평균	2019년 1월	2019년 2월	2019년 3월	2019년 4월	2019년 5월	2019년 6월	2019년 (1~6월) 평균
19.5	19.5	20.8	17.2	22.0	29.8	37.4	24.3

자료: 한국거래소 Market data를 토대로 작성함

- 종목별 일평균 호가 및 체결 건수와 수량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6>과 같음
- 1kg의 경우 일평균 호가 건수는 2014년 300건에서 2016년 5,103건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 1,183건으로 감소함
 - 일평균 체결 건수도 2014년 104건에서 2017년 358건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 277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현재 359건으로 다시 증가함
 - 일평균 체결 수량도 2014년 5,555g에서 2019년 21,215g으로 증가함
 - 2017년부터 100g 거래단위가 신설되면서 일평균 호가 건수가 2017년 89건에서 2019년 13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일평균 체결 건수도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일평균 체결 수량도 2019년 1,360g으로 2017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함

<표 II -6> 종목별 일평균 호가 및 체결 건수·수량 추이

(단위: 건수, g,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kg	1kg	1kg	1kg	100g	1kg	100g	1kg	100g
호가 건수	300	546	5,103	2,905	89	1,454	67	1,183	133
호가 수량	38,089	51,291	4,981,252	1,592,864	23,400	410,417	7,528	214,876	22,428
체결 건수	104	183	308	358	14	277	8	359	26
체결 수량	5,555	8,916	17,805	22,963	401	19,300	281	21,215	1,360
체결 대금	236	378	835	1,053	18	868	13	1,019	66

자료: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 가격의 경우 2019년 6월 28일 기준, 52,770원으로 2014년 3월 24일 시장 개설 시 가격인 46,950원 대비 5,820원 상승함
- 2019년 6월까지 KRX 금 시장 종가 평균 가격(금 현물 1kg 기준)은 48,240원으로 전년 대비 약 7.1% 증가함
- 현재 KRX 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6월 25일 기준 53,020원으로 이는 연초 46,240원보다 약 14.7% 증가한 수치임
 - 2015년 12월 3일 39,900원 대비 32.8% 높은 53,020원을 최고가로 기록함
 - 이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및 달러화 약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해 안전자산이면서 달러의 대체재로 볼 수 있는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함에 기인함
- 최근 3년간 국제 금 가격 증가 평균(Tenfore 환산) 대비 100.18~100.35% 수준으로 시세가 결정됨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국거래소 내부자료에 따르면 KRX 금 시장 가격의 경우 장외 도매가격 대비 0.5~1.5% 정도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가장 유리한 가격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표 II -7> KRX 금 시장과 국제 금 시세 현황(금 현물 1kg 기준)

(단위: 원/g¹⁾,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²⁾
KRX 금 시장 종가 평균	42,696	42,568	46,661	45,814	45,033	48,240
국제 금 종가 평균 (Tenfore 환산)	42,424	42,190	46,536	45,715	44,874	48,153
비율 (KRX 금 시세/국제 금 시세)	100.64	100.89	100.27	100.21	100.35	10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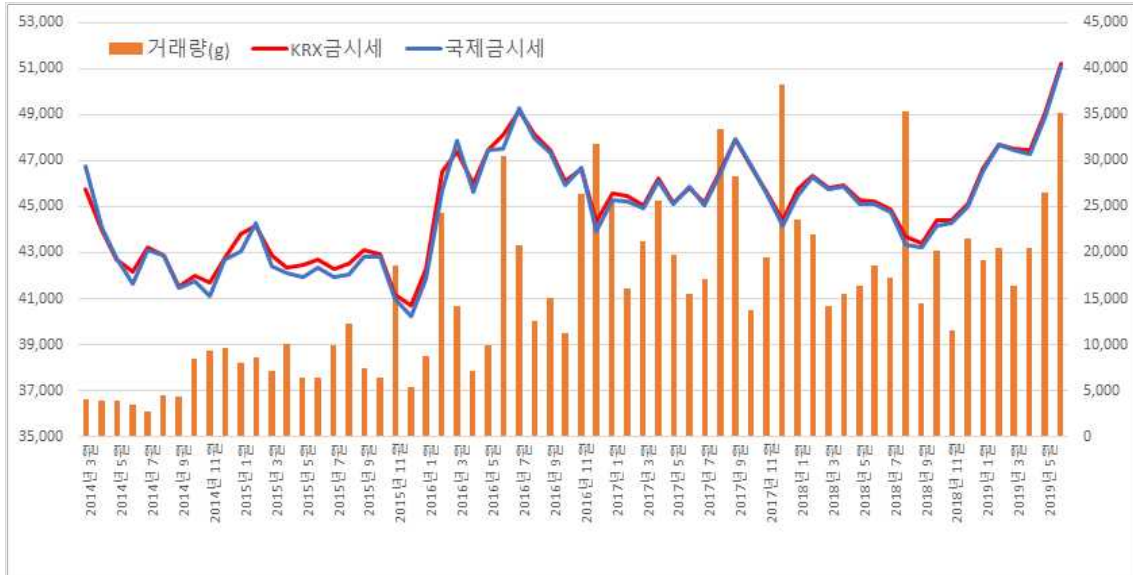
주: 1) 원/g 가격은 Tenfore 제공 실시간 국제 금 시세에 서울외국환중개 실시간 환율을 적용, 1oz=31.1035g,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

원/g 산출방법 = Tenfore 실시간 금 시세 * 서울외국환중개 실시간환율(USD/KRW) / 31.1035

2) 2019년 6월까지의 종가 평균 값임

자료: 한국거래소 Market data를 토대로 작성함

[그림 II -2] KRX 금 시장 개설 이후 월평균 거래량 및 금 시세 추이(금 현물 1kg 기준)
(단위: g, 원/g)



주: 1. 국제 금 시세의 경우 Tenfore 환산
2. 좌측 단위는 원/g, 우측 단위는 g
자료: 한국거래소, Tenfore

□ KRX 금 시장의 금지금 누적 잔고량(2018년 말 기준)은 4.8톤이며, 이는 한국은행의 2018년 말 금 보유량인 104.4톤의 약 4.6%에 해당함

<표 II -8> KRX 금 시장의 금지금 누적 잔고량 현황

(단위: kg,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누적 잔고량	810	2,192	3,122	4,053	4,817
누적 잔고금액 ¹⁾	343	891	1,411	1,817	2,214

주: 1) 누적 잔고금액은 연말 종가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 KRX 금 시장에 투자하는 시장참가자의 경우 금지금 공급사업자인 실물사업자가 매도 주체로, 개인투자자가 매수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

○ 매도 및 매수 합계 비중의 경우 2014년 실물사업자가 45.3%, 개인투자자가 54.7%, 기관 0.03%에서 2018년에 각각 32.2%, 51.0%, 16.8%로 기관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 기관 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16년 7월 수급개선을 위해 도입된 유동성 공급자(LP) 제도에 기인함

<표 II -9> 투자자별 매도 및 매수 거래 비중 현황

(단위: kg, %)

구분	개인			실물사업자			기관		
	매도	매수	합계	매도	매수	합계	매도	매수	합계
2014년	178 (17.0)	975 (92.4)	1,154 (54.7)	876 (83.0)	79 (7.6)	955 (45.3)	0 (0.0)	0.73 (0.07)	0.73 (0.03)
2015년	671 (30.4)	2,035 (92.0)	2,706 (61.2)	1,538 (69.6)	175 (8.0)	1,713 (38.8)	1.4 (0.06)	0.7 (0.03)	2.1 (0.05)
2016년	2,336 (54.8)	3,242 (76.2)	5,578 (65.6)	1,625 (38.2)	715 (16.8)	2,341 (27.5)	287 (6.7)	288 (6.8)	575 (6.8)
2017년	2,332 (44.9)	3,046 (58.7)	5,378 (51.8)	2,221 (42.8)	1,534 (29.6)	3,755 (36.2)	628 (12.1)	545 (11.6)	1,173 (11.8)
2018년	1,905 (45.3)	2,381 (56.7)	4,286 (51.0)	1,719 (40.9)	985 (23.5)	2,705 (32.2)	575 (13.7)	833 (19.8)	1,409 (16.8)

주: ()는 비중
자료: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 KRX 금 시장 입고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10>과 같음

- 2014년 3월 말, 금 거래에 대한 양성화 목적으로 개설된 KRX 금 시장은 2019년 6월 현재까지 총 9,038kg이 입고되었음
- 금 입고의 경우 주로 대형유통업체인 한국금 거래소, 삼성금 거래소, 풍산화동양행이며, 금 인출은 중소 실물사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금 입고량은 2014년 KRX 금 시장 개장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 감소하기 시작함
- 2017~2018년 수입금의 증가는 인도의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⁷⁾ 시행⁸⁾ 및 국내 최대 금 생산업체인 LS-Nikko 동제련의 생산 차질이 주 요인임

7) 인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리하여 징수하였던 간접세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10여가지의 간접세 항목을 3가지 항목으로 통합하여 부과함. GST는 품목군을 세율에 따라 5가지로 나누고 있음. 생필품에는 낮은 세율, 사치품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임. 상품마다 영세율, 5%, 12%, 18%, 28%의 세율을 차등으로 적용함. GST는 기존에 난립되었던 간접세를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GST 제도 내에서 포섭이 되지 않는 기존 간접세 중 7개의 항목(Cesses)은 남아있게 됨. ① Education Cess(수입품), ②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Cess(수입품), ③ Cess on Crude Petroleum Oil, ④ Road Cess(디젤), ⑤ SAD on Motor Spirit, ⑥ NCCD(담배), ⑦ NCCD(원유)(<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59307>, 검색일자: 2019. 6. 26)

8)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0376>(검색일자: 2019. 6. 21)

- 2017년 7월 시행된 GST로 한국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CEP) 및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한 국가(기본관세율 0% 적용을 받는 국가)로부터의 금 수입이 증가함
- 새로운 GST 제도 내 소비세는 GST로 포함됐으며, 모든 금(Gold) 품목은 3%의 GST가 적용됨에 따라 기존에 부과한 12.5%의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CVD)가 3%의 GST세율로 변경되면서 인도 내 CEP 및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금 및 골드코인의 수입이 증가함
-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금을 수입·가공하여 골드코인 형태로 인도에 수출함
- 20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금 수요의 증가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 및 달러화 약세 등에 따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와 미중 무역전쟁⁹⁾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기인함
-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금광석 확보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LS-Nikko가 원광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체련된 금지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국내금의 공급은 크게 감소함

〈표 II -10〉 KRX 금 시장 연도별 금지금 입고 현황

(단위: kg,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합계
국내금	456 (-)	893 (95.8)	793 (△11.2)	1,643 (107.2)	230 (△86.0)	275 (-)	4,290
수입금	361 (-)	536 (48.5)	759 (41.6)	845 (11.3)	1,777 (110.3)	470 (-)	4,748
관세 면제금	-	-	120 (-)	481 (300.8)	1,442 (199.8)	136 (-)	2,179
FTA 수입금	361 (-)	536 (48.5)	639 (19.2)	364 (△43.0)	335 (△8.0)	334 (-)	2,569
총입고량	817 (-)	1,429 (74.9)	1,552 (8.6)	2,488 (60.3)	2,007 (△23.0)	745 (-)	9,038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9) 2018년 7월 6일 미국이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미국과 동일하게 340억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미국이 3차례에 걸쳐 160억달러, 2,000억달러, 3,250억달러 규모로 고관세율을 부과(중국은 160억달러, 600억달러 규모로 2차례 관세율 인상)함

- KRX 금 시장 출고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시장 개설 당시 7kg에서 2018년 1,243kg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25.8% 감소하였으나,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8년에는 국내 귀금속 시장 침체 및 국내 금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KRX 금 시장에 금 입고량이 감소함

<표 II -11> KRX 금 시장 출고량 현황

(단위: kg,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출고량	7 (-)	47 (571.4)	622 (1,223.4)	1,675 (169.3)	1,243 (△25.8)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 연도별 금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12>와 같음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상 금(HS 7108)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HS 7108-12-1000: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 럼프(lump), 빌릿(billet), 알갱이(grain)
 - HS 7108-12-9000: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 기타
 - HS 7108-13-9010: 기타 /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shape)
 - HS 7108-13-9020: 기타 / 판(plate), 시트(sheet), 스트립(strip)
 - HS 7108-13-1010: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반도체 제조용
 - HS 7108-13-1090: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기타
 - HS 7108-13-9090: 기타
 - HS 7108-11-0000: 가루
 - HS 7108-20-0000: 화폐용
 - 연도별 금 수입량의 경우 2016년에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특히 2017년에 막대 및 바 형태의 금 품목의 수입량이 큰 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HS 7108-12-9000와 HS 7108-13-9010 품목의 경우 수입량이 2017년에 큰 폭 증가하였으나, 2018년 다시 크게 감소하였음

<표 II -12> 연도별 금 및 금지금 수입 금액 추이

(단위: 천달러, 백만원, kg,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월
HS 7108-12-1000	470,069 (12,002)	644,914 (12,655)	675,514 (12,609)	689,436 (15,347)	702,798 (17,195)	612,991 (16,387)	338,717 (8,400)	383,453 (9,460)	358,628 (8,801)	104,028 (2,491)
HS 7108-12-9000	583,431 (14,980)	552,677 (11,087)	448,277 (8,373)	399,149 (8,775)	324,725 (8,065)	319,575 (8,792)	273,835 (6,911)	831,239 (20,464)	389,180 (9,803)	131,059 (3,214)
HS 7108-13-9010	343,648 (8,878)	277,800 (5,026)	256,272 (4,851)	227,006 (4,958)	244,239 (5,929)	242,115 (6,411)	242,201 (6,179)	944,845 (23,156)	237,201 (5,947)	58,394 (1,461)
HS 7108-13-9020	3,225 (90)	3,027 (85)	7,468 (164)	4,655 (121)	1,773 (58)	594 (85)	900 (132)	818 (44)	1,230 (105)	213 (16)
HS 7108-13-1010	136,647 (3,671)	122,305 (2,524)	70,778 (1,277)	21,373 (805)	18,020 (799)	48,103 (1,605)	32,670 (1,009)	23,057 (1,221)	17,999 (677)	9,415 (347)
HS 7108-13-1090	2,422 (159)	1,908 (113)	1,444 (142)	1,022 (134)	1,068 (157)	1,805 (356)	1,038 (66)	1,381 (95)	2,104 (193)	812 (48)
HS 7108-13-9090	9,467 (884)	10,413 (934)	6,760 (527)	8,463 (861)	6,380 (870)	3,964 (1,426)	21,997 (2,215)	6,917 (1,819)	6,602 (2,180)	2,427 (1,488)
HS 7108-11-0000	276 (19)	180 (9)	162 (30)	255 (35)	256 (50)	429 (29)	482 (120)	569 (344)	735 (56)	341 (28)
HS 7108-20-0000	0 (1)	-	1 (1)	-	32 (254)	29 (67)	33 (2)	80 (14)	93 (102)	23 (28)
금 수입 합계(HS7108)	1,549,185 (40,684)	1,613,225 (32,433)	1,466,677 (27,974)	1,351,360 (31,036)	1,299,290 (33,377)	1,229,607 (35,158)	911,873 (25,033)	2,192,358 (56,618)	1,013,772 (27,863)	306,712 (9,122)
금 현물시장 금지금 (신고 기준)	-	-	-	-	-	-	9,702 (220)	23,701 (528)	64,528 (1,442)	-
금 현물시장 금지금 (실거래 기준)	-	-	-	-	-	-	4,432 (120)	19,475 (481)	58,024 (1,442)	-
금 수입 대비 금 현물시장 금지금 비중 (신고 기준)	-	-	-	-	-	-	0.9	0.9	5.2	-
금 수입 대비 금 현물시장 금지금 비중 (실거래 기준)	-	-	-	-	-	-	0.5	0.8	5.2	-
수입 금지금 ¹⁾ 대비 금 현물시장 비중 (신고 기준)	-	-	-	-	-	-	3.6	2.3	24.2	-
수입 금지금 대비 금 현물시장 비중 (실거래 기준)	-	-	-	-	-	-	1.9	2.1	24.2	-

주: 1. ()는 수입증량

2. 금 현물시장 금지금(신고 기준)의 금액은 과세가격 원화기준으로 단위는 백만원이며, 그 외 항목은 천달러 기준임

3. 금 수입 및 면제금 대비 금 현물시장 금지금 비중은 수량 기준임

1) 수입 금지금은 HS 7108-13-9010을 말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 금 현물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입 금지금은 HS 7108-13-9010 중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 수입신고한 금지금을 의미함
- 금 현물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입 금지금의 양은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120kg에서 2017년 481kg으로 전년 대비 약 300.8%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1,442kg으로 전년 대비 약 199.8% 증가함
 - 전체 금 수입 대비 금 현물시장의 수입 금지금 비중은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0.5%에서 2018년 5.2%까지 증가함
 - 관세 면제 대상인 HS 7108-13-9010 수입량 대비 금 현물시장의 수입 금지금 비중은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1.9%에서 2018년 24.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라. KRX 금 시장 개설 이후 성과¹⁰⁾

1) 유동성 확대 및 국내시장 수급 안정화

- KRX 금 시장 개설 이후 정부의 금 현물시장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거래수수료 면제 등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실물사업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개인투자자의 금 보유량도 확대되기 시작함
 - 앞서 <표 II-9>와 같이 개인투자자의 경우 거래량이 2014년 1,154kg에서 2018년 4,286kg으로 약 271.4% 증가하였으며, 실물사업자의 거래량도 2014년 955kg에서 2018년 2,705kg으로 약 183.2% 증가함
- 또한 일시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KRX 금 시장을 통한 수입금 공급의 확대를 통해 국내 금 시장의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바 있음
 - 2018년 국내 최대 금 생산업체인 LS-Nikko 동제련에 생산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KRX 금 시장 수입금 입고량이 증가함
 - 2018년 기준 면세 금지금 수입량이 1,442kg으로 전년 대비(2017년 기준 481kg) 약 199.8% 증가함

10) 이 부분은 금 현물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보도자료, 「KRX 금 시장 5주년 성과 및 향후 운영 방향」 및 내부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2) 금 시장 양성화 진전 및 질적 성장

- 2014년 3월 24일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9,038kg이 입고되어 약 21톤(약 9,592억원)이 거래됨에 따라 국내 금 시장의 양성화를 도모함
 - 또한 KRX 금 시장 가격이 국제 금 시세 대비 100.18~100.35% 사이(최근 3년 기준)로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있음(<표 II-7> 참조)
 - 특히 장외시장 대비 0.5~1.5%가량 낮게 가격이 형성되어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며 이는 국제 금 시세 등락폭 및 추세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KRX 금 시장 참여 시 소액으로도 품질이 보장된 금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게도 새로운 투자 및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3) 외환보유고 증대 효과

- 누적 금지금 잔고량(연말 종가 기준)을 살펴보면 2018년 말 기준 4,817kg으로 KRX 금 시장 개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표 II-8> 참조)
 - 이는 한국은행의 2018년 말 기준 금 보유량 104.4톤 대비 4.6%에 해당하는 수치임
 -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으로 약 250톤의 고금 수집을 통해 대외결제에 활용한 바 있음
 - 따라서 KRX 금 시장에 누적되는 금지금 잔고가 부수적으로 대외 지급수단의 추가 확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옴

4) 현물 기준 가격으로서의 역할

- KRX 금 시장 가격은 국제 금 시세 대비 100.18~100.35%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국제 금 시세 등락폭 및 추세와 거의 일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함

- 장외시장의 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가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금 세공업자 등의 매입원가 절감에도 기여함
- 터키 이스탄불 금 시장의 금 가격지수가 터키 국내 금 시장의 금 가격 기준으로, 그리고 대내외 금 가격지수로 활용되면서 금 시장의 신뢰도와 활성화 제고에 기여한바와 같이, 우리나라 KRX 금 시장 가격도 기준가격으로, 그리고 가격지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Ⅲ. 금 투자 대체시장과의 비교



Ⅲ. 금 투자 대체시장과의 비교

1. 골드뱅킹 및 금 ETF

가. 골드뱅킹(gold banking)

- 골드뱅킹(gold banking)은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환율을 적용하여 금으로 적립한 후 고객이 출금 요청 시 국제 금 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지급해주는 금 적립계좌로 파생결합증권을 의미함¹¹⁾
 - 즉 시중은행이 금괴, 금 통장, 금 증서, 금 대출 등 금과 관련된 상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2003년 7월부터 도입되었음

- 골드뱅킹의 경우 2가지 방법으로 금을 거래할 수 있음
 - 가상거래형 골드뱅킹: 가상으로 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금 펀드와 금 ETF와 유사함
 - 금 계좌, 금 증서, 금 대여, 금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등
 - 실물거래형 골드뱅킹: 실제로 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현물 금 거래와 유사함
 - 즉 금화 및 금화 모양의 메달 매매업무, 골드바의 매매업무 등

- 현재 국내 시중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에서는 금 실물 인수 없이 자유롭게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금융투자상품과 실제로 금 실물거래가 수반되는 상품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수시입출금식 금 통장의 경우 신한은행의 ‘신한골드리슈골드테크’, 우리은행의 ‘우리골드투자’, KB국민은행의 ‘KB골드투자통장’이 있음
 -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골드리슈금적립’, ‘Kids&Teens 금적립’ 상품도 있음
 - 금 실물거래가 수반되는 상품으로는 골드바 매매거래가 있는데, 신한은행만 국내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은행브랜드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음

11)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GLD0004>(검색일자: 2019. 5. 14)

- 우리은행은 ‘한국조폐공사 골드바’와 ‘(주)한국금 거래소쓰리엠 골드바’를 대행 판매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은 ‘(주)한국금 거래소쓰리엠 골드바’만 대행 판매하고 있음

- 현재 시중은행 3곳의 수시입출금식 금 통장을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III-1>과 같음
- 신한은행의 경우 자유적립식으로 신규 시 1g 이상 거래 이후 0.01g 단위로 거래가 가능함
 - 기초자산가격의 경우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환율을 감안하여 신한은행이 고시하는 1g당 원화기준 금 가격으로 함
 - 거래가격은 거래시점의 고시된 대고객환율을 적용하여 매입 시 금매매기준율 + 스프레드 1%, 매도 시 금매매기준율 - 스프레드 1%를 적용함
 - 스프레드 1%란 금매매기준율 × 1%를 의미

<표 III-1> 시중은행별 수시입출금식 금 통장 비교

구분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상품명	신한골드리슈골드테크	우리골드투자	KB골드투자통장
거래단위	0.01g 이상 (최초 신규 시 0원 신규 가능)	0.01g 이상 (신규 가입 시 1g 이상)	0.01g 이상
거래가격	매입 시: 매입하는 시점의 고시된 대고객환율 적용(금매매기준율 + 스프레드 1%) 매도 시: 매도하는 시점의 고시된 대고객환율 적용(금매매기준율 - 스프레드 1%)		
세제 관련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15.4% 원천징수 (단 세법상 비거주자의 경우 별도 세율 적용)		
환율우대 및 부가서비스	예약매매 ²⁾ 및 반복매매 ³⁾ 50%, 자동이체 40%, 인터넷 거래 시 30%로 스프레드 우대율 적용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 거래 시, 자동이체 ⁴⁾ , 골드적립이체 ⁵⁾ , 지정가 반복매매 ⁶⁾ 거래 시 환율우대 30% 적용	-

- 주: 1) 스프레드 1%란 금매매기준율 × 1%를 의미함
 2) 예약매매란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목표가격에 도달할 경우 각 1회에 한해 자동매도 또는 자동 매입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3) 반복매매란 주기적으로 반복매도가격 이상이면 일정량씩 매도하고 반복매입가격 이하이면 일정량씩 매입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4) 자동이체란 주기적으로 매입 골드량 또는 원화금액을 사전에 지정하여 자동매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함
 5) 골드적립이체란 이체지정일 전일의 금 가격과 직전 3개월 평균 골드가격과 비교하여 별도로 지정된 이체비율을 이체기준금액에 적용하여 자동 매입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함
 6) 지정가반복매매란 주기적으로 지정가매입가격 이하이면 일정량씩 매입, 지정가매도가격 이상이면 일정량씩 매도하는 서비스로, 지정가 반복 매도 시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경우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의미함

자료: 시중은행별 홈페이지 참조

- 비과세종합저축 불가 상품임

-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의 경우에도 신한은행과 동일한 거래단위 및 거래가격이 적용됨
- 단 은행별로 환율 우대 및 부가서비스 항목은 차이가 있음

□ 현재 시중은행 3곳의 골드바 매매거래를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III-2>와 같음

-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골드리슈골드바’ 상품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순도 99.99%의 영국 LBMA(런던금시장협회)에서 인증된 금을 판매하며, 국내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은행브랜드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음

<표 III-2> 시중은행별 골드바 매매거래 비교

구분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상품명	신한골드리슈골드바	골드바 매매서비스	골드바 매매서비스
판매형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순도 99.99%의 영국 LBMA(런던금시장협회)에서 인증된 일정 중량의 금(골드바) 판매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주)한국금 거래소쓰리엠 골드바를 대행 판매 ¹⁾	(주)한국금 거래소쓰리엠 골드바를 대행 판매 ¹⁾
실물종류	10g, 100g, 500g, 1kg	·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37.5g, 100g, 375g, 500g · (주)한국금 거래소쓰리엠 골드바: 10g, 100g, 1kg	10g, 100g, 1kg
적용가격	· 골드바 판매가격(원) = 기준가격 ²⁾ x 골드바중량 x (1+판매마진율) · 골드바 매입가격(원) = 기준가격 x 골드바중량 x (1-매입마진율) · 판매(매입)마진율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음 ³⁾		
부가가치세	매입 가격에 대해 10%(매도할 경우는 부과하지 않음)		

주: 1) 한국조폐공사 골드바의 경우 (주)골드앤드실버가 위탁생산한 골드바를 한국조폐공사를 대행하여 우리은행이 판매, (주)한국금 거래소쓰리엠 골드바의 경우 LS-Nikko동계련(주)가 제조한 골드바를 (주)한국금 거래소쓰리엠을 대리하여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판매함

2) 기준가격은 국제 금 가격 및 환율을 이용하여 금 1g당 원화가격으로 환산하여 은행이 거래시점에 고시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음

$$\text{「기준가격 [원/g]} = \text{국제 금 가격 [$/T.oz]} \div 31.1034768 \text{ [g/T.oz]} \times \text{환율 [원/\$]}$$

국제 금 가격은 거래시점에 은행이 고시하는 1트로이온스당 미달러화 표시가격을 말하며, 거래시점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신청서의 내용을 은행 전산 단말기에 입력 및 실행 완료하여 골드바의 가격이 산출되는 시점을 말함

3) 판매마진율(고객매입 시)의 경우, 한국조폐공사 골드바는 37.5g은 6%, 그 외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하는 반면, (주)한국금 거래소쓰리엠 골드바는 10g은 7%, 100g은 5%, 1kg은 4.90%의 마진율을 적용함. 매입마진율(고객매도 시)의 경우 공통적으로 5%의 마진율을 적용함. 신한은행의 경우 10g은 6%, 그 외 3가지 중량은 5%를 적용함

자료: 시중은행별 홈페이지 참조(<https://bank.shinhan.com/index.jsp#020703012800>(신한은행, 검색일자: 2019. 5. 16),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GLD0018>(우리은행, 검색일자: 2019. 5. 16),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29413>(KB국민은행, 검색일자: 2019. 5. 16))

- 신한은행에서 거래되는 골드바 종류는 1kg, 500g, 100g, 10g 4종류로 현재는 10g 골드바의 경우 골드바 제작사 사정에 따라 일시 중지된 상태이며, 500g 골드바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예정임
- 신한은행을 제외한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의 경우 (주)한국금 거래소쓰리엠 골드바 매매서비스를 대행하며, 우리은행은 한국조폐공사 골드바도 추가로 매매대행을 하고 있음
- 실물종류의 경우 한국조폐공사 골드바는 37.5g, 100g, 375g, 500g이며, (주)한국금 거래소쓰리엠 골드바는 10g, 100g, 1kg으로 거래됨

나. 금 신탁 및 금 ETF

1) 금 신탁

- 현재 KRX 금 시장과 연계된 신탁상품(KRX 금 시장에 상장된 금 현물 대상)은 KB국민은행(골드바신탁)과 IBK기업은행(IBK골드모아신탁) 상품이 있음
 - KB골드바신탁은 1kg 거래단위 기준 2017년 7월에 출시, 100g 거래단위는 2019년 4월 출시되었으며, 운용자산 투자위험등급은 3등급으로 다소 높은 위험의 실적배당상품임
 - IBK골드모아신탁은 2018년 1월에 출시되었으며, 운용자산 투자위험등급이 2등급으로 높은 위험의 실적배당상품임
 - 두 상품 모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존재함
- IBK골드모아신탁의 경우 소액투자자 접근성이 용이하며, 자동이체 가능 등 편의성이 높다는 측면이 동 상품의 장점이라 할 수 있으나, 비교적 고위험 투자 상품이며, 일부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 KB골드바신탁의 경우 투자자에 외국인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확대한 점과 일부해지가 가능한 점, 임의식 또는 적립식 투자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음
 - 반면 IBK골드모아신탁과 같이 비교적 고위험 투자 상품이며, 매도할 경우 지급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단점이 있음

- 두 신탁 상품의 주요 내용 및 운용방법은 다음의 <표 Ⅲ-3>과 같음
- 두 신탁 상품 모두 가입대상이 개인으로 미성년자도 가능하나, 법인은 불가능하며, KB골드바신탁의 경우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함
 - 최저가입금액은 IBK골드모아신탁은 10만원 이상으로 자동이체가 가능하며 추가 입금도 10만원 이상 가능한 반면, KB골드바신탁은 500만원 이상으로 자동이체가 불가능하고 추가 입금은 200만원 이상 가능함
 - 두 상품 모두 중도해지는 가능하지만, IBK골드모아신탁은 일부해지는 불가능함
 - 운용자산의 경우 두 상품 모두 KRX 금 시장에 상장된 금 현물로 1kg 대상이지만, KB골드바신탁은 2019년 4월에 100g 거래대상 상품도 출시하였음
 - 세금 및 수수료의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매수 및 매도 시 각 0.2%, 중도해지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나, 실질적으로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면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표 Ⅲ-3> 금 신탁 상품 비교

구분	IBK골드모아신탁	KB골드바신탁
출시일	2018. 1. 9	1kg: 2017. 7. 7 100g: 2019. 4. 19
운용자산	KRX 금 시장에 상장된 금 현물	
가입대상	개인 (미성년자 가능, 외국인·법인불가)	개인 (미성년자·외국인 가능, 법인불가)
신탁기간	신탁계약일로부터 5년 (해지의사가 없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기간 연장)	신탁계약일로부터 10년 (해지의사가 없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기간 연장)
최저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원단위 (추가입금: 10만원 이상 원단위, 자동이체 가능)	500만원(30만원) 이상 원단위 {추가입금: 200만원(30만원) 이상 원단위, 자동이체 불가(가능)} ※ 100g은 적립식만 가능
신탁보수	선취형: 신탁금액의 1.0% (입금건별 수취)	선취형: 신탁금액의 1.0% (입금건별 수취)
해지	중도해지 가능, 일부해지 불가	중도해지 가능, 일부해지 가능
세부자산	금 현물 99.99_1kg	금 현물 99.99_1kg, 100g
거래단위	1g	1g

구분	IBK골드모아신탁	KB골드바신탁
세금 및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차익 비과세 · 매수/매도 거래 시 각 0.2% · 실물인출 시 부가가치세 10% 부담 (도입 예정) · 중도해지수수료: 1년 미만 1%, 2년 미만 0.8%, 2년 이상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차익 비과세 · 매수/매도 거래 시 각 0.2% · 실물인출 시 부가가치세 10% 부담 (*18.4월 도입 완료) · 중도해지수수료: 1년 미만 1%, 2년 미만 0.8%, 2년 이상 0.6%
지급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도신청일 + 1영업일 2) 매도신청일 + 2영업일 	해지신청일 포함 3영업일에 지급
매매체결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RX 금 시장 내 접수된 호가(시장 가격)로 우선체결 · 고객별 매매단가는 거래당일 체결 수량의 평균 매매단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매수(매도)가격: 매수(매도) 시점 형성 금 가격에서 0.35~0.4% (0.15~0.2%) 내외 높은 가격(낮은 가격) ※ 신청계좌별 순차매매
유동성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 현물 매수 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 매도 시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매매 지연 가능 · KRX 금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LP증권사가 공급하는 유동성에 의존,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할 경우 투자대상 상품의 유동성에 문제 초래 가능 	
매매체결 이연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된 LP증권사의 현물보유량에 따라 당일 또는 익일 영업일 매매가 어려울 경우 또는 매수 종가가격이 국제 금 가격을 크게 벗어날 경우 매매 이연 가능 · 휴장으로 인한 매매이연 또는 매매거래 시간 조정에 따른 매매기준 시간 임시변경 가능 	
시장위험/ 개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RX 금 시장은 국제 금 가격 및 원달러환율에 연동됨에 따라 투자 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환율 등 경제 지표 변화에 따른 위험 	

자료: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2) 금 ETF

- 국내 금 펀드 및 금 ETF는 해외 금선물지수(S&P Gold Index 등)와 해외 금 채굴 업체 등에 투자한 상품이라 큰 변동성에 따른 손실과 높은 수수료 및 배당소득세(15.4%) 등이 발생함
 - 반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제3호)
 - 현재 KRX 금 시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 ETF 상품은 없음

- 금 투자방법 중 하나인 금 ETF는 금 시세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로 현재 3개의 자산운용사에서 5개의 ETF 상품을 운용하고 있음
 -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골드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파생형)(H)
 - 삼성자산운용: 삼성 KODEX 골드선물인버스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파생형](H), 삼성 KODEX 골드선물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파생형)(H)
 -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 KINDEX 골드선물인버스2X 특별자산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합성 H), KINDEX 골드선물레버리지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파생형)(합성 H)

- 자산운용사별 국내 금 ETF 상품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III-4>와 같음¹²⁾
 - 미래에셋자산운용사의 TIGER 골드선물상품은 S&P GSCI Gold 지수 Total Return 을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하고 있음
 - S&P GSCI Gold Index Total Return 지수는 S&P Dow Jones Indices에서 발표하는 지수로, 미국상품거래소(Commodity Exchange: COMEX)에 상장된 금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의미함
 - Total Return(TR)은 선물 투자 시 발생하는 롤오버비용¹³⁾ 반영 및 선물 투자 시 증거금 이외의 투자원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가정한 이자수익을 반영한 지수를 의미
 - 삼성자산운용사의 KODEX 골드선물(H) 상품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인 S&P GSCI Gold Total Return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
 - Standard&Poor's가 산출하는 S&P GSCI Gold Total Return 지수는 S&P GSCI Total Return 지수의 귀금속 섹터의 하위 지수 중 하나로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금선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지수로, 동 ETF는 금현물이 아닌 금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임
 - 삼성자산운용사의 KODEX 골드선물인버스(H) 상품은 S&P GSCI Gold Index ER을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 변동률의 음(陰)의 1배와 연동하여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

12) 각 상품별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작성함

13) 일반적으로 채권이나 계약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나 선물시장에서는 차익거래 등의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다음 만기일로 이월하는 것을 의미함

- 한국투자신탁운용사의 KINDEX 골드선물 인버스2X(합성 H) 상품은 S&P WCI Gold Excess Return Index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인 S&P WCI Gold Excess Return Index의 일간수익률 음(-)의 2배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¹⁴⁾
 - 이를 위하여 S&P WCI Gold Excess Return Index의 일간수익률 음(-)의 2배성과를 제공하는 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함
 - Standard&Poor's가 산출하는 S&P WCI Gold Excess Return 지수는 일본 동경 선물거래소의 골드선물 기초가격 움직임을 달러화한 지수임
 - S&P WCI GOLD Excess Return Index는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재 선물의 가격 변화에 선물 만기 시 발생하는 만기이월효과(Rollover Effect)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지수임
 - 따라서 월 선물과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양(+의 효과와 음(-)의 효과가 반영되어 산출되는, 즉 최근월물에서 차근월물로 롤오버(Rollover)되면서 발생하는 효과가 포함됨

〈표 III-4〉 국내 금 ETF 상품 비교

(단위: %, 억원)

운용사	상품명	기초지수	상장일	수익률 (최근1년)	순자산 총액
미래에셋 자산운용	TIGER 골드선물(H)	S&P GSCI Gold Index(TR)	2019. 4. 9	-	108
삼성자산 운용	KODEX 골드선물인버스(H)	S&P GSCI GOLD Index Excess Return	2017. 11. 9	△9.64	47
	KODEX 골드선물(H)	S&P GSCI Gold Index(TR)	2010. 10. 1	10.37	783
한국투자 신탁운용	KINDEX 골드선물 인버스2X(합성 H)	S&P WCI Gold Excess Return Index	2015. 12. 3	△20.48	58
	KINDEX 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 H)		2015. 7. 28	18.05	283

자료: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14) [http://marketdata.krx.co.kr/mdi#547c5e15ef32e37dc099b89d69ac8970-\[objectHTMLDivElement\]=1&document=08010202](http://marketdata.krx.co.kr/mdi#547c5e15ef32e37dc099b89d69ac8970-[objectHTMLDivElement]=1&document=08010202)(검색일자: 2019. 7. 1)

- 한국투자신탁운용사의 KINDEX 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 H) 상품은 S&P WCI Gold Excess Return Index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인 S&P WCI Gold Excess Return Index의 일간수익률 양(+)의 2배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
 - 이를 위하여 S&P WCI Gold Excess Return Index의 일간수익률 양(+)의 2배성 과를 제공하는 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함

다. KRX 금 시장과의 비교

- 한국거래소 금 시장과 다른 금 투자 상품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III-5>와 같음
 - 거래단위의 경우 KRX 금 시장은 1g 단위, 골드뱅크는 0.1g, 0.5g, 1g 단위, 금 펀드는 5만원 이상, 장외거래인 현물 거래의 경우 주로 1돈 단위로 거래되고 있음
 - KRX 금 시장의 경우 5만원 미만의 소액 투자도 가능함
 - 거래가격의 경우 KRX 금 시장은 장내에서 형성되는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되며, 골드뱅크는 원화로 환산된 국제가격을 고려한 은행 고시 가격으로 거래됨
 - 금 거래 비용은 국제 금 시세와의 가격 차이, 세금, 수수료 등이며, KRX 금 시장의 금 1g당 시세는 국제 금 시세(Tenfore)의 100.18%(2019년 6월까지 기준) 수준임
 - 평균적으로 국제 금 시세의 약 100.2~100.3% 수준인 금 ETF나 골드뱅크, 금 도매 및 소매보다 가격이 저렴함
 - 거래수수료의 경우 KRX 금 시장은 0.2%이며, 골드뱅크(1~5%), 금 ETF(1~1.5%) 등보다 저렴한 수준임
 - 세금의 경우 KRX 금 시장은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골드뱅크이나 금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됨
 - 단 실물을 인출할 경우 KRX 금 시장, 골드뱅크, 실물매매 모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표 III-5> KRX 금 시장과 다른 금 투자 상품 비교

구분		KRX 금 시장	골드뱅크	금 ETF	금은방
거래단위		1g 단위	0.1g, 0.5g, 1g 단위	5만원 이상	주로 1돈 단위
가격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시간 가격	원화로 환산된 국제가격을 고려한 은행이 고시하는 가격	금 선물 및 관련 기업 주식투자, 국제 금 가격에 연동되는 ETF에 투자	
장내거래	수수료	증권사 온라인수수료 (0.2% 내외)	계좌거래 시: 매매기준율 × 1% 실물거래 시: 매매기준율 × 5%	선취수수료 (1~1.5%)	실물거래만 존재
	세금	장내거래 시 부가가치세(10%) 면제	양도소득세 과세	-	
실물인출	인출비용	2만원 내외	실물거래만 인출 가능(실물거래수수료 5% 포함)	실물 인출 불가	업체마다 상이함
	부가세	거래가격의 10%	거래가격의 10%		
금인출		증권사 지점에서 인출(수령) 가능(2일 소요)	은행 영업점에서 인출(수령) 가능(1주 소요)	-	

자료: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2. KRX 금 선물시장

- 금 선물이란 미래 일정 시점에 인수 또는 인도할 금을 현재 선물시장을 통해 매매하는 계약을 의미함¹⁵⁾
 - 예를 들어 금 선물 1계약을 매수했다는 의미는 금과 1kg을 미래의 정해진 날짜인 만기일에 현재의 매수가격으로 인수하기로 약속했다는 의미임
 - 금 선물은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선물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상품으로 한국거래소에 1999년 4월에 상장된 금 선물과 2010년 9월에 상장된 미니 금 선물이 있었으나 두 상품은 2015년 11월 19일 기준으로 상장 폐지되고, 기존 미니 금 선물이 2015년 11월 23일부터 새롭게 상장되어 현재 유일한 금 선물상품임

1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920&cid=43659&categoryId=43659>(검색일자: 2019. 5. 15)

- 한국거래소의 금 선물 상품(미니금선물)은 2015년 11월 19일까지는 기초자산의 최종 결제가격이 런던금시장협회(LBMA) 공표가 기준이었으나, 2015년 11월 23일에 상장된 상품의 경우 KRX 금 시장 종가로 기준을 변경함
- 또한 금 선물의 거래시간 및 가격제한폭 등도 KRX 금 시장 기준으로 변경함
 - 이는 기존 금 선물시장 거래량이 정체된 상황에서 2014년 KRX 금 시장 개장 이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금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연계를 통해 두 시장의 균형 발전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 목적임

□ 한국거래소 금 선물 일평균 거래량을 2015년까지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6>과 같음

- 금 선물 상품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량 및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2014년까지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다가 KRX 금 시장 개장 이후 2015년에 거래량이 4배 이상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15년 11월 23일 이후 새로운 미니금선물 시장이 상장되었으나 현재 까지 거래량이 없어서 금 선물시장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고 있음

<표 III-6> 금 선물 일평균 거래량 현황

(단위: 계약 수, 백만원)

기간	거래량			거래대금		
	결제월 ¹⁾	스프레드 ²⁾	전체	결제월 ¹⁾	스프레드 ²⁾	전체
2010년	393	12	406	1,961	61	2,022
2011년	727	8	735	3,901	45	3,946
2012년	88	4	91	529	22	551
2013년	130	11	141	664	52	716
2014년	32	12	44	136	52	187
2015년	140	19	158	591	80	671

주: 1) 순수월물(스프레드 제외)

2) 근월물 계약 수 + 원월물 계약 수

자료: 한국거래소

IV. 금 현물시장 및 금 과세 해외사례



IV. 금 현물시장 및 금 과세 해외사례

1. 해외 금 시장

가. 2019년 세계 금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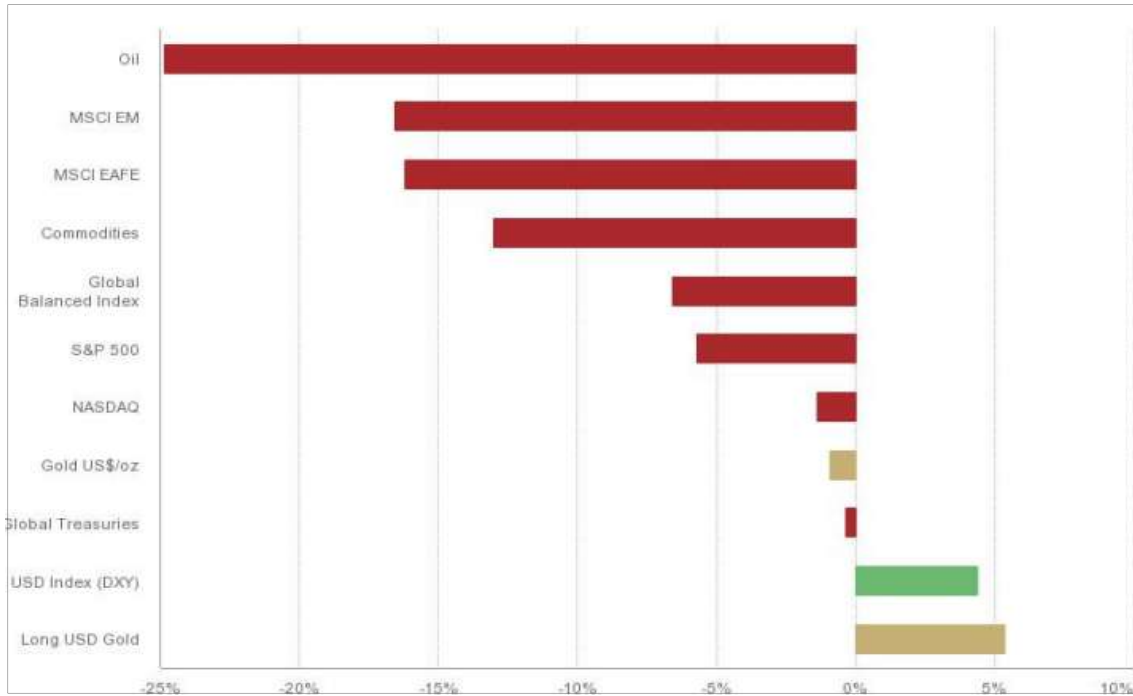
- 2019년도에도 시장위험과 경제성장에 따라 금 수요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함
 -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금융시장 불안정, 통화정책과 US달러화 가격, 구조적 경제개혁 등을 열거할 수 있음
 - 이러한 저해요인에 대하여 금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형성에 지속적으로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함

- 2018년도 금 가격은 고점에서 하락하다가 3분기 이후 다시 상승하였고 연말에도 고점 이전까지 상승하고 있었음
 - 하반기에 달러화 강세, 미국의 경기 부양 등으로 미국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금 수요 자체는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냄
 - 그러나 지정학적(geopolitical) 위험과 거시경제적(macro-economic)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신흥시장 주식이 정체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첨단기술(tech) 회사 주식의 매도 추세 속에서 선진시장 주식도 뒤따라 주춤함
 - 결과적으로 금 가격이 연말 온스당 1,280달러 선에서 마쳤는데, 금에 대한 단기매입(short covering)으로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림 IV-1]은 2018년도 금과 다른 글로벌 자산들의 투자 성과를 요약한 것임
 - 다른 글로벌 자산이 음의 수익률을 내고 있음에 반해 금 투자는 양의 수익률을 내고 있음
 - 금 자체에 대한 수익률 실현이라고 하기보다는 미달러 강세에 대한 일종의 헤지(hedge)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판단됨

[그림 IV-1] 금 및 글로벌 자산의 성과

(단위: %)



자료: 블룸버그(Bloomberg), ICE Benchmark Administration, World Gold Council(WG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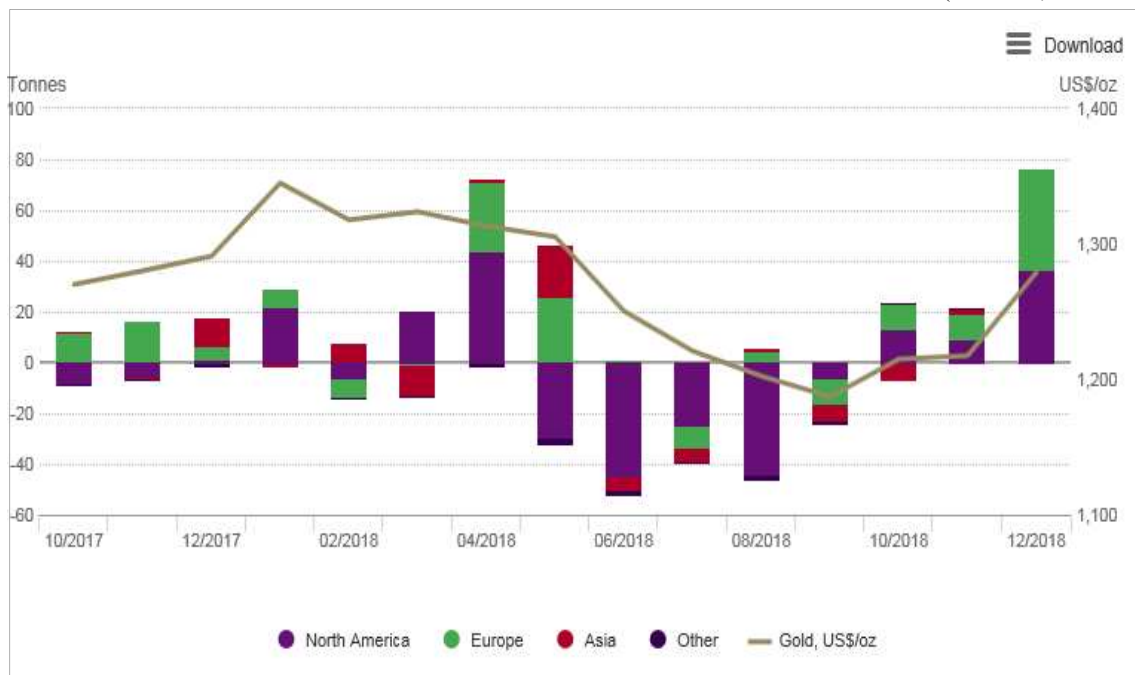
- 세계금위원회(World Gold Council)는 2019년도 세계 금 시장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여 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시장위험 증가와 보호주의 경제정책 확장이 금을 헤지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를 강화함
 - 이자율 상승과 달러 강세로 인한 견제요인이 있었으나, 미연방은행(Fed)이 좀더 중립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이들 요인들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함
 - 세계 주요 금 시장이 운용되는 국가경제에서의 구조적(structural) 경제개혁이 보석류, 기술 그리고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의 금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함

- 세계적으로 2018년에 금 ETF로의 순유출(net outflow)이 있었음
 - 북미에서 2사분기나 3사분기에 상당량의 순유출이 있었으나 4사분기에는 위험이 강화되면서 이 추이가 변동하게 됨
 - 2019년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다문화수단과 체계적 위험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금을 지속적으로 선호할 것으로 예상함

- [그림 IV-2]는 금 ETF의 세계 지역별 월 유출입량(flow) 변동과 금 가격의 추이를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월별로 보여주고 있음
 - 금 기반의 ETF 유입량(inflow)이 감소하면서 금 가격이 감소하였으나 유입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금 가격이 증가하는 추세임
 - 2018년도 말의 금 가격 상승은 북미와 유럽의 선진시장에서 금 기반의 ETF 유입량 증가가 선도하였다고 보여짐

[그림 IV-2] 지역별 금 ETF 월 유출입량 및 금 가격 추이(2018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톤, USD/o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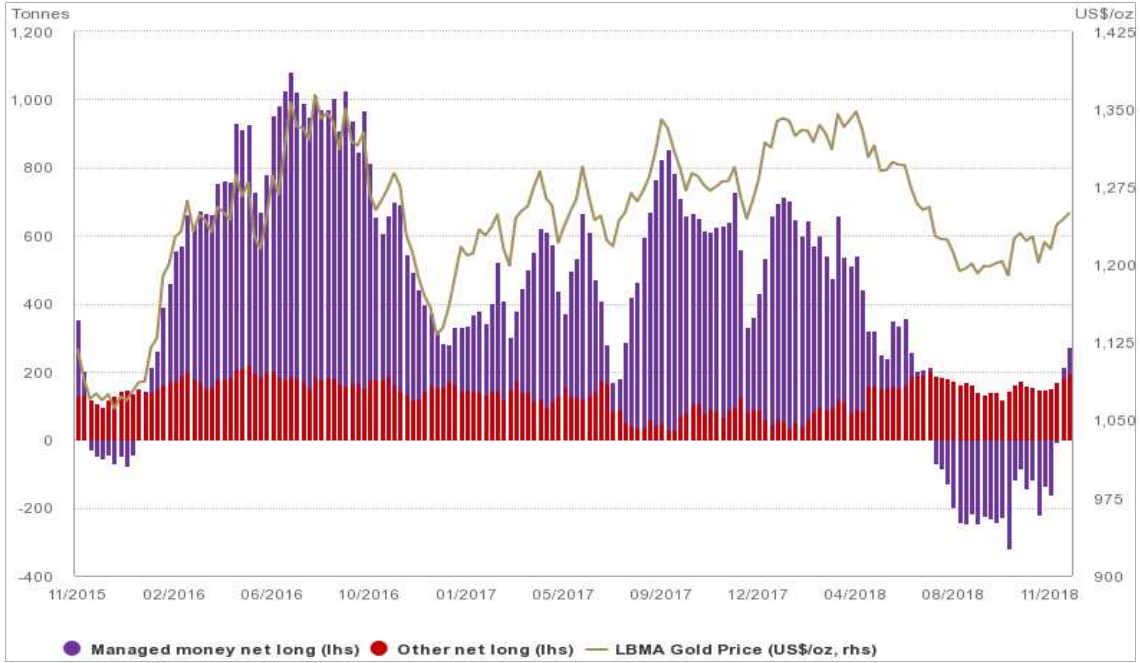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ompany Filings, ICE Benchmark Administration, Shanghai Gold Exchange, WGC

- [그림 IV-3]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순매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음
 - CME의 관리통화 순매수 포지션은 2018년 중반부터 순매도 포지션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외 기타자산 순매수 포지션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금은 기타자산에 속하고 순매수 포지션이 유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타자산의 순매수 포지션의 일종인 금에 대하여도 순매수가 진행되고 금 현물가격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그 이전 감소 추세에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림 IV-3]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순매수 포지션

(단위: 톤, USD/o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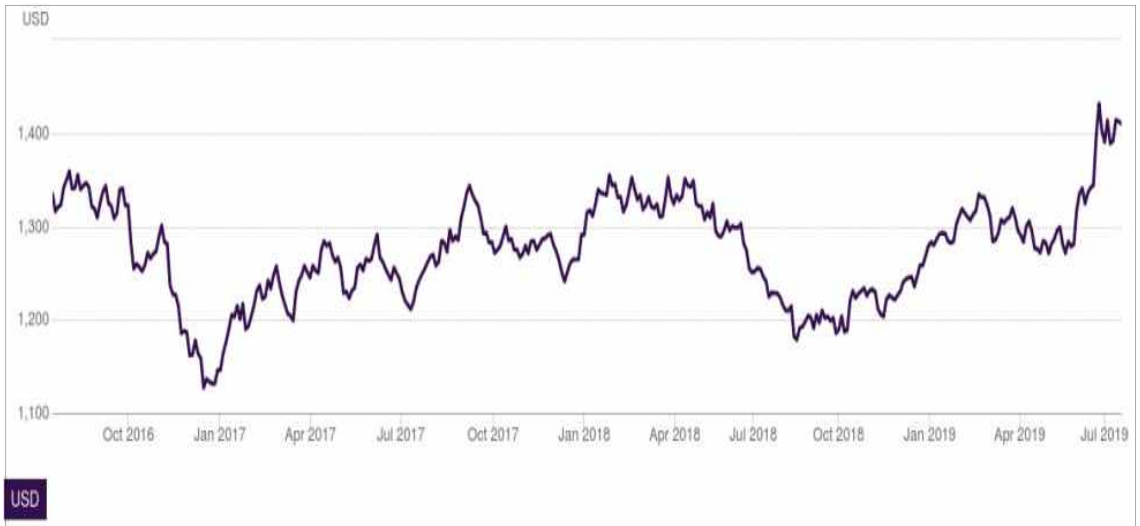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WGC

- [그림 IV-4]는 2016~2019년 기간 동안의 금 가격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미국 달러화 가격 기준으로 2017년 1월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등락을 보이다가 2018년 3사분기부터 다시 상승 추세임

[그림 IV-4] 세계 금 가격 추이

(단위: 온스 당 미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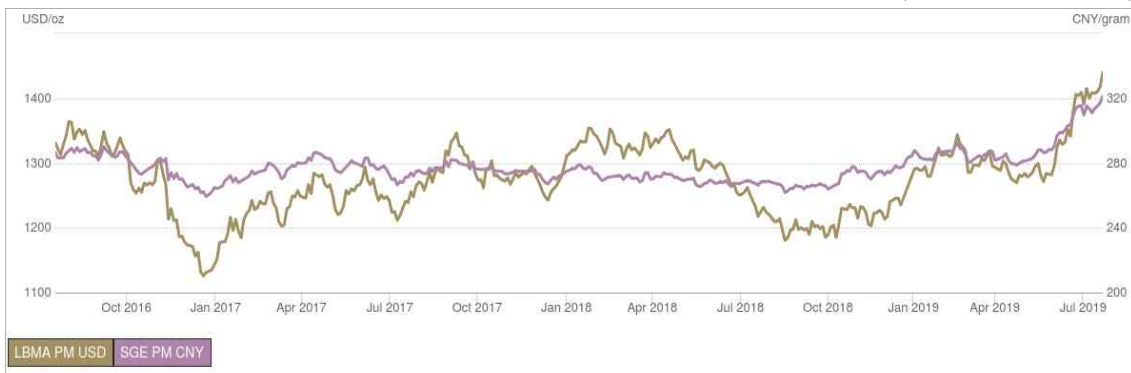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World Gold Council

- [그림 IV-5]는 2016~2019년 기간 동안 세계의 대표적 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런던금시장협회의 금 가격과 중국 상하이황금거래소의 금 가격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이 기간 동안 세계 금 시장의 금 가격은 대체로 2017년 1월에서 2018년 10월 까지 하나의 사이클로 상승 및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됨
 - 2018년 10월부터 또 하나의 사이클이 형성되어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특기할 것은 런던금시장협회의 금 가격에 비하여 상하이황금거래소(SGE)의 금 가격이 이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임
 - 이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세계 금 시장의 확장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¹⁶⁾

[그림 IV-5] 런던과 상하이 금 가격 추이

(단위: 온스당 미달러)



자료: 블룸버그, World Gold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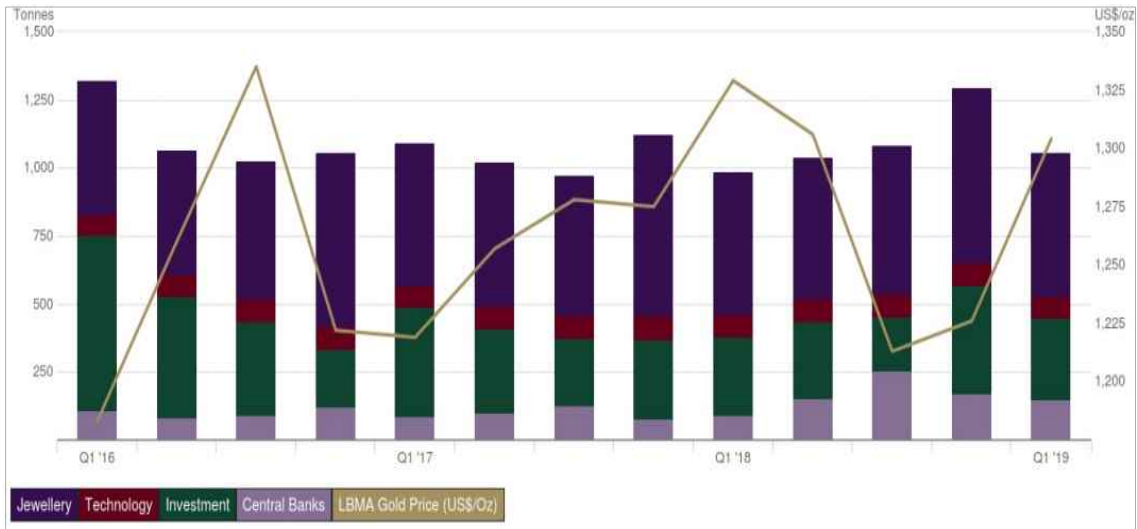
- [그림 IV-6]은 2016년 1사분기부터 2019년 1사분기까지 세계 금 시장 수요 추이를 금 가격과 함께 보여주고 있음
 - 2016년 1사분기 이후 금 수요는 감소하여 다소의 등락이 있으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4사분기에 다시 증가한 후, 2019년 1사분기에 다시 감소함
 - 금 수요를 보석류(jewellery), 산업용(technology), 투자용(investment), 중앙은행 수요(central banks) 등으로 분류하여 보면, 보석류와 투자용 수요가 가장 많으며, 중앙은행 및 산업용 투자는 적은 편으로 나타남

16) 물론 금 시장의 특성상 금 관련 금융상품시장, 국제통화상품시장, 국제금융시장 등과의 역학 관계 속에서 금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별도로 요구되고 있음

- 2016년 1사분기와 2019년 1사분기를 비교하면, 보석류와 산업용 수요는 대체로 일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투자용 수요는 줄어들고 중앙은행 보유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6] 세계 금 시장 수요 및 금 가격 추이: 2016~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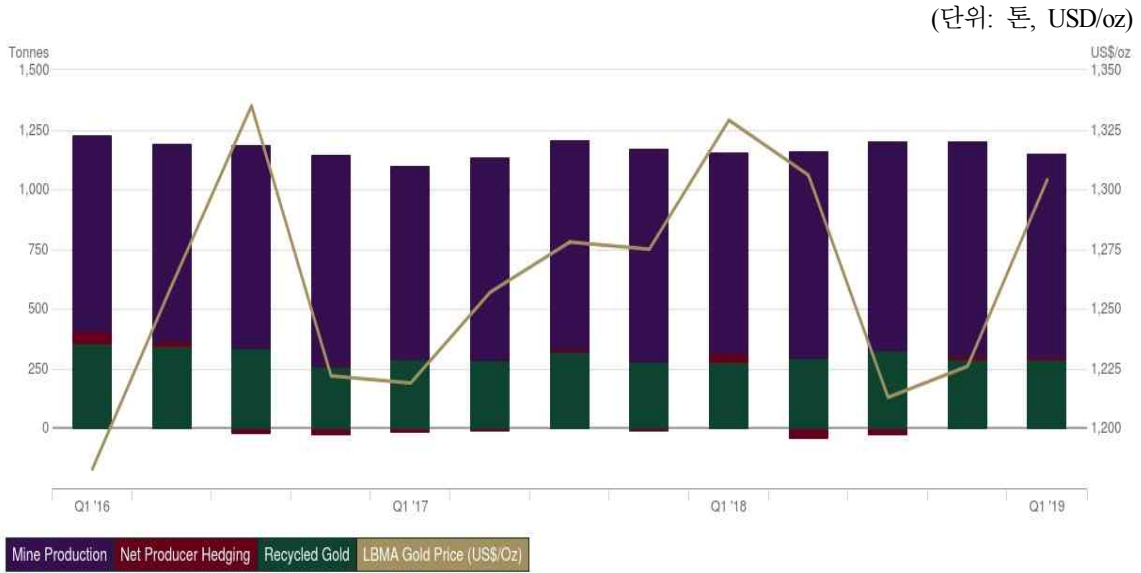
(단위: 톤, USD/oz)



자료: 블룸버그, ICE Benchmark Administration, World Gold Council

- [그림 IV-7]은 2016년 1사분기부터 2019년 1사분기까지 세계 금 시장 공급 추이를 금 가격과 함께 보여주고 있음
 - 금 공급은 2016년 1사분기부터 다소간의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금 공급은 금 수요에 비해 비교적 편차가 더 작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금이 선호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함
 - 금 공급을 금광생산(mine production), 순생산자 헤징(net producer hedging), 재활용금(recycled gold)으로 분류하여 보면, 금의 공급은 대부분 금광채굴과 재활용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림 IV-6]과 [그림 IV-7]을 통하여 나타난 금의 수요와 공급량을 금 가격과 비교하면, 금 가격은 단순히 세계 금 시장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 이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음
 - 금 가격의 등락에서 보이는 최솟값과 최댓값들이 반드시 금 수요의 증가나 금 공급의 감소와 일치하지 않고 있음

[그림 IV-7] 세계 금 시장 공급 및 금 가격 추이: 2016~2019년



자료: 블룸버그, ICE Benchmark Administration, World Gold Council

나. 주요국의 금 보유고(reserve) 추이

- <표 IV-1>은 주요국의 금 보유고 추이를 2001년 1사분기, 2007년 1사분기, 2013년 1사분기, 2019년 1사분기에 걸쳐 보여줌
- <표 IV-1>에 의하면 전 세계 금 보유고는 2001년 1사분기 3만 3,022톤에서 2019년 1사분기 3만 4,024톤으로 약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결국 2019년 현재 전 세계 금 보유고는 2001년 대비 103.03% 수준으로 비교적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1년 1사분기 금 보유고 순위는 미국(8,137.1톤), 독일(3,468.6톤), IMF(3,217.3톤), 프랑스(3,024.6톤), 이탈리아(2,451.8톤), 스위스(2,368.5톤) 순임
 - 2019년 1사분기 금 보유고 순위는 미국(8,133.5톤), 독일(3,369.7톤), IMF(2,814.0톤), 이탈리아(2,451.8톤), 프랑스(2,436.0톤), 러시아 연합(2,168.3톤), 중국(1,885.5톤), 스위스(1,040.0톤) 순임
 - 중국과 러시아 연합의 금 보유고가 2001년 대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변화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이들 두 나라보다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음
 - 반면 스위스, ECB, 네덜란드 등의 보유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1〉 주요국의 금 보유고 추이

(단위: 톤, %)

국가	2001년	2007년	2013년	2019년	변화율 ¹⁾
오스트리아	347.5	288.7	280.0	280.0	80.58
중국	395.0	600.0	1,054.1	1,885.5	477.32
유럽중앙은행(ECB)	766.9	641.7	502.1	504.8	65.82
프랑스	3,024.6	2,688.9	2,435.4	2,436.0	80.54
독일	3,468.6	3,422.5	3,391.3	3,369.7	97.15
그리스	123.0	111.9	112.0	113.2	91.99
국제통화기금(IMF)	3,217.3	3,217.3	2,814.0	2,814.0	87.47
인도	357.8	357.7	557.7	612.6	171.22
이탈리아	2,451.8	2,451.8	2,451.8	2,451.8	100.00
일본	763.5	765.2	765.2	765.2	100.22
대한민국	13.7	13.0	104.4	104.4	763.83
네덜란드	911.8	640.9	612.5	612.5	67.17
러시아 연합	390.5	400.3	981.6	2,168.3	555.22
싱가폴	127.4	127.4	127.4	127.4	100.00
스위스	2,368.5	1,290.1	1,040.1	1,040.0	43.91
대만	421.76	423.00	423.63	423.6	100.44
태국	73.6	84.0	152.4	154.0	209.13
터키	-	-	116.1	293.8	-
영국	437.1	310.3	310.3	310.3	70.99
미국	8,137.1	8,133.5	8,133.5	8,133.5	99.95
금 가격지수	257.7	661.8	1,598.3	1295.4	502.68
세계	33,022	30,396	31,762	34,024	103.03
유로지역	12,607.8	11,357.4	10,796.9	10,778.5	85.49
CBGA4signatories ²⁾	15,155.9	12,797.9	11,956.9	11,944.3	78.81

주: 1) 변화율은 2001년 대비 2019년까지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감소하였어도 양수로 처리함

2) CBGA4signatories는 제4차 중앙은행금협정 비준국가들로 유로지역을 포함하여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4~2019년 기간 동안 유효함

자료: Central Banks, ICE Benchmark Administration, IMF, WGC

- 우리나라는 2001년 1사분기 13.7톤에서 2019년 1사분기 104.4톤으로 증가함
 - 우리나라는 금 보유고 증가율이 약 7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금 보유고 증가는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짐

- 금 보유고 1,000톤 이상의 대규모 보유국가로는 중국(1,885.5톤), 프랑스(2,436.0톤), 독일(3,369.7톤), IMF(2,814톤), 러시아연합(2,168.3톤), 스위스(1,040.0톤), 미국(8,133.5톤) 등이 있음
 - 유로지역의 보유고를 모두 합하면 2019년 1사분기 현재 1만 778.5톤으로 2001년 1사분기 대비 15% 감소하였음
 - 이러한 감소는 오스트리아, 유럽중앙은행, 프랑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등 유로지역 국가들의 금 보유고가 줄어든 데 기인함
 - 비유럽의 경우 앞서 언급한 중국과 러시아 연합 외에 인도와 태국 등의 금 보유고가 2001년에 비해 2019년에 크게 증가하였음

-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금 가격지수는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싱가포르, 미국 등은 금 보유고를 일정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터키의 경우 2013년 116.1톤에서 2019년 293.8톤으로 최근 2배 이상 금 보유고를 늘렸음
 - 중국의 경우 2013년에 이미 1,054.1톤을 보유하고있음에도 계속 증가시켜서 2019년에는 1,885.5톤을 보유하고 있음

- 금 보유고는 대외무역에서 결제를 위해 준비하는 준비금의 한 종류로 사용되는 데 준비금으로는 미달러화 등 각종 국제통화들도 사용됨
 - 따라서 단순히 금 보유고만을 가지고 정책방향이냐 정책의도를 과도하게 해석할 수는 없음

- <표 IV-2>는 주요국의 분기별 금 보유고의 외환보유고 대비 비중 현황을 이용하여 2001년 1사분기, 2007년 1사분기, 2013년 1사분기, 2019년 1사분기별 금 보유고 비중 추이를 보여줌

- <표 IV-2>에 의하면 전 세계 금 보유고 비중은 2001년 1분기 11.9%에서 2019년 1사분기 10.6%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결국 2019년 현재 전 세계 금 보유고 비중은 2001년 대비 89.04%로 비교적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IV-2>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대비 금 보유고 비중 추이

(단위: %)

국가	2001년	2007년	2013년	2019년	변화율 ¹⁾
오스트리아	18.7	45.0	55.0	49.8	266.32
중국	1.8	1.0	1.5	2.5	136.74
유럽중앙은행(ECB)	15.4	25.3	32.6	26.6	172.71
프랑스	39.8	56.6	70.4	60.8	152.77
독일	35.0	63.6	72.3	70.3	200.95
그리스	15.8	80.3	82.5	64.5	409.59
국제통화기금(IMF)	-	-	-	-	
인도	6.9	3.8	9.6	6.1	89.30
이탈리아	44.0	65.8	71.6	66.1	150.13
일본	1.8	1.8	3.1	2.5	141.05
대한민국	0.1	0.1	1.6	1.1	896.58
네덜란드	44.8	56.7	59.2	66.3	148.06
러시아연합	11.1	2.5	9.6	18.5	166.85
싱가폴	1.3	1.9	2.5	1.8	131.07
스위스	39.6	42.0	10.2	5.4	13.54
대만	3.1	3.3	5.1	3.7	119.62
태국	1.9	2.5	4.4	3.0	159.98
터키	-	-	5.3	14.0	
영국	7.8	9.7	13.8	7.9	102.07
미국	55.9	75.7	75.5	74.8	133.79
금 가격지수 ²⁾	257.7	661.8	1,598.3	1,295.4	502.68
세계	11.9	10.3	12.4	10.6	89.04
유로지역	28.9	50.4	62.0	54.0	186.72
CBGA4signatories ³⁾	29.6	48.0	41.6	29.3	99.15

주: 1) 변화율은 2001년 대비 2019년까지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감소하였어도 양수로 처리함

2) 금 가격지수의 단위는 %가 아님

3) CBGA4signatories는 제4차 중앙은행금협정 비준국가들로 유로지역을 포함하여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4~2019년 기간 동안 유효함

자료: Central Banks, ICE Benchmark Administration, IMF, WGC

- 2001년 1사분기 금 보유고 비중 순위는 미국(55.9%), 네덜란드(44.8%), 이탈리아(44.0%), 프랑스(39.8%), 스위스(39.6%), 독일(35.0%) 순임
- 2019년 1사분기 금 보유고 비중 순위는 미국(74.8%), 독일(70.3%), 네덜란드(66.3%), 이탈리아(66.1%), 그리스(64.5%), 프랑스(60.8%), 오스트리아(49.8%) 순임

- 우리나라의 금 보유고 비중은 2001년 1사분기 0.1%에서 2019년 1사분기 1.1%로 증가함
 - 우리나라는 금 보유고 비중 증가율이 896.58%로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임
 - 이러한 금 보유고 비중 증가는 외환보유고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금 보유고 10% 이상의 국가로는 오스트리아(49.8%), 유럽중앙은행(26.6%), 프랑스(60.8%), 독일(70.3%), 그리스(64.5%), 이탈리아(66.1%), 네덜란드(66.3%), 터키(14.0%), 미국(74.8%) 등이 있음
 - 특히 유로국가들은 54.0%로 2001년의 28.9%에 비해 비중 증가율이 86.72%에 이름
 - 미국도 금 보유고 비중이 74.8%로 부동의 1위로 2001년 55.9%에 비해 33.79% 증가하였음
 - 오스트리아, 유럽중앙은행,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대부분의 유로화 국가들이 금 보유고 비중의 증가를 경험함
 - 특이하게도 스위스는 금 보유고 비중이 2001년 39.6%에서 2019년 5.4%로 87% 감소함
 - 터키의 경우 2013년 5.3%에서 2019년 14.0%로 최근 2배 이상의 금 보유고 비중 증가가 발생함

- 비유럽의 경우는 중국,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증가한 국가들이 대부분이지만 인도처럼 감소한 경우도 있음

다. 터키 금 현물시장 사례

1) 터키 금현물시장 위상

- <표 IV-3>은 세계 금 시장 및 금 거래소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터키의 이스탄불 금 거래소는 상해금거래소와 함께 100% 실물 금이 배달되고 주로 현물시장이 운영됨
 - 터키의 이스탄불 금 거래소의 규모가 현물과 선물을 포함하는 세계 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현물 금 시장에서는 작지 않은 규모임

<표 IV-3> 세계 금 거래소 거래 현황

(단위: net tonnes)

	2015	2016	2017
터키 이스탄불 거래소, BORSA iSTANBUL ¹⁾	383	339	426
뉴욕 상품거래소, COMEX	130,135	179,047	226,440
상하이선물거래소, SHFE	25,137	34,760	19,478
상하이황금거래소, SGE ¹⁾	7,288	11,793	11,754
도쿄거래소, TOCOM	7,928	8,541	6,398
인도 다상품거래소, MCX	3,947	4,094	2,297
상하이황금거래소 현물, SGE Spot ²⁾	4,727	3,699	3,956
두바이금상품거래소, DGCX ³⁾	348	453	359
뉴욕 대륙 간 거래소 선물, ICE Futures US	508	294	152

주: 1) 100% 실물 배달, 주로 현물

2) 상하이황금거래소(SGE)는 상하이황금거래소 현물거래(SGE Spot)를 포함함

3) 실물 금으로 보장된 거래

자료: BORSA iSTANBUL

- 터키 금 시장 개설의 목적은 유럽의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시장을 양성화하여 금 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한 기관에 의해 집중적으로 금 시장을 견인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됨
- <표 IV-4>는 전 세계 공인 외환보유고 중 금 보유량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금 보유량은 외환보유고 대비 1.1%로 인접국인 중국(2.5%), 일본(2.4%), 대만(3.6%), 태국(3.0%), 싱가포르(1.7%)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음
 - 터키의 13.9%와 비교하여서도 매우 낮기 때문에 향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적정 수준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함

<표 IV-4> 세계 공인 금 보유량 현황(2019년 6월 말 기준)

(단위: 톤, %)

순위	국가	금 보유량	외환보유고 대비 비중
1	미국	8,133.5	74.6
2	독일	3,367.9	69.9
3	IMF	2,814.0	NA
4	이탈리아	2,451.8	65.5
5	프랑스	2,436.0	59.8
6	러시아 연합	2,183.4	18.3
7	중국	1,900.4	2.5
8	스위스	1,040.0	5.3
9	일본	765.2	2.4
10	인도	612.6	6.1
11	네덜란드	612.5	66.0
12	유럽중앙은행(ECB)	504.8	25.7
13	대만	423.6	3.6
18	영국	310.3	7.8
19	터키 ¹⁾	296.1	13.9
22	오스트리아	280.0	49.4
27	태국	154.0	3.0
29	싱가폴	127.4	1.7
34	그리스	113.2	64.9
35	대한민국	104.4	1.1

주: 1) 터키의 공식 금 보유량은 터키 중앙은행에 보관된 상업은행이 보유한 금을 제외한 수치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 터키 금 현물시장 개요

- 터키의 Borsa Istanbul(또는 BIST)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시장 등 주요 4개 거래시장으로 구성된 거래소로 무엇보다도 대량의 금 현물을 거래하는 것으로 유명함
 - Borsa는 터키어로 거래소이며 Borsa Istanbul은 이스탄불 거래소라는 의미로 통합거래소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금 현물거래는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시장에서 현물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금을 중시하는 전통을 바탕으로 금 거래를 양성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것을 추진하였음

- 터키의 「자본시장위원회법」 6362호에 의해 발효되어 터키 자본시장의 모든 거래를 하나의 지붕 아래 묶은 것이라 볼 수 있음
 - 상품거래를 포함한 주식, 파생금융상품 등을 포괄적으로 연동하여 거래하는 현대금융의 트렌드에 맞추어 하나의 커다란 신뢰도를 갖춘 공식거래소 아래에서 여러 거래 중 하나로 금 현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 BIST(Borsa Istanbul의 약칭)의 주요 기능과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음
 - 자본시장 상품, 외화, 귀금속 및 보화, 그리고 기타 거래, 문서, 자산 등이 평이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경쟁적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무역조건하에서 거래되는 것을 보장함
 - 주요 자산들에 대한 구입 및 처분 주문에 대해 신속한 매칭의 목적으로 시장, 하부시장, 플랫폼, 시스템 그리고 다른 조직화된 시장을 창출하고 설치하고 발전시킴
 - 발견된 가격을 결정하고 선언함
 - 언급된 또는 다른 거래나 다른 거래의 시장들을 관리하거나 작동시킴

- 터키 통화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1993년 금 가격, 금 수출 그리고 금 수입이 자유화됨
 - 이에 따라 금부문을 재편하려는 새로운 결정들이 수행됨
 - 이스탄불 금 거래소(IGE)의 설치가 1993년에 결정됨
 - IGE의 설치는 금을 금융부문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즉 금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순응하게 됨

- 귀금속 시장은 표준적인 그리고 비표준적인 금, 은, 백금, 팔라듐의 현물거래를 주로 하는 공식 거래소임

- BIST의 공식적인 금 지수 발표는 금을 금융부문에 연계시키는 주요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BIST 금 지수는 금 1온스당 미달러화의 금 거래에 대한 일일 수익(return)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안된 것임

- 금 지수는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실현되는 금 거래의 증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거래되는 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최소 995천분율의 순도(fineness)를 지님
 - 런던금시장협회(LBMA)와 출입금 가능
 - 터키 BIST 주 금고(main vault)에 보관됨
 - 표준적인 1킬로그램 금지금(bullion gold)

- 금 지수 공식은 $GI_t = GI_0 \times \frac{P_t}{P_0}$ 와 같음
 - GI_t 는 t일의 금 지수 가치
 - GI_0 는 금 지수의 기준 가치
 - P_t 는 t일 결제된 온스당 미달러화 거래의 증가
 - P_0 는 기준일에 결제된 온스당 미달러화 거래의 증가

- BIST 금 지수의 기준일과 기준 가치는 2004년 12월 31일 가격을 1,000으로 봄
 - 그리고 P_0 는 434.9USD/ounce, 즉 온스당 434.9미달러로 고정됨

- BIST 금 지수는 업무일(business day)에는 9~16시, 반업무일(half-business day)에는 9~12시 동안 매 10초 간격으로 계산됨
 - 지수 수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까지 반올림함

- 금 지수가 터키 내 공식지표로 지속적으로 공시되기 때문에 자산가치의 대표성을 촉진시키고 거래소의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볼 수 있음

3) 터키 금 현물시장 제도

- 터키 BIST는 주식거래와 함께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거래를 수행하고 있음
 - 2013년 3월에 이스탄불 금 거래소(IGE)와 이스탄불 증권거래소(ISE)가 합병되어 설립됨
 - 거래소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특히 금 상품 기반의 새로운 상품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과거 IGE는 1995년에 설립되어 금, 은, 백금, 팔라듐 등 4대 귀금속 현물거래를 수행하였음
 - BIST는 합병 후 금 보관 서비스, 다이아몬드 및 보석 무역을 추가하여 거래와 업무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BIST의 귀금속 거래 및 무역 관련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금, 은, 백금, 팔라듐의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래와 관련한 등록 업무
 - 자국 내 생산된 귀금속 거래 및 등록 업무
 - 회원 소유 귀금속, 뮤추얼 펀드, 상장지수 펀드 등의 자산관리 업무
 - 터키 중앙은행 보유 귀금속 보관 업무
 - 귀금속 상품 개발 및 법령 연구 업무

- BIST는 귀금속 시장, 귀금속 대여시장, 다이아몬드 및 보석 거래시장 등 3개의 하위 시장으로 구성됨
 - 귀금속 시장에서는 표준 또는 비표준 형태의 금, 은, 백금, 팔라듐에 대해 현물거래를 취급함
 - 귀금속 대여시장은 규정된 귀금속의 인증서 거래나 대여 등을 취급함
 - 다이아몬드 및 보석 거래시장은 다양한 보석 관련 회사와 귀금속시장 회원으로 구성되어 거래를 주도함

- BIST 취급 금은 영국 LBMA 적격생산업체와 터키 내 지정된 제련업체들로부터 공급됨
 - 대부분 거래되는 골드바는 400온스짜리와 1킬로그램짜리가 있음
 - 400온스짜리 골드바는 영국 LBMA 적격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음
 - 1킬로그램짜리 골드바의 경우 순도를 995~999.9천분율까지 인정하고 있음
 - 비표준 골드바의 경우도 거래되는데 순도는 585천분율 이상이면서 자체 세부 규정을 충족하는 거래에서 가능함

- 터키 금 거래소 금은 거래청산국(Exchange Clearing Department)에 예탁되는데 금 거래 실물 인수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함

- 매도자는 귀금속을 거래 당일 16시까지 거래소 금고에 입고하고 매수자는 거래 당일 17시까지 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매도자가 귀금속을 입고하고 매수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청산국에 의해 조기 인수도로 청산함
 - 거래소 금고 밖에서의 회원 간 귀금속 인수는 자유롭지만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는 계좌 간 차감 후 2시간 내에 실행되어야 함
- 터키의 금을 포함한 귀금속 유통 관련 세제지원은 다음과 같음
- 금, 은, 백금을 추출하거나 정제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귀금속 원석이나 금, 은에 가공처리를 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
 - 터키 영내에서 공급된 가공되지 않은 금과 외환은 부가세 면세
 - 가공되지 않은 채로 공급되는 투자금의 경우 부가세 면세
 - 반지 등 가공된 금제품을 매매할 경우 18%의 부가세를 과세하나 관세는 없음
- 터키 귀금속 품질인증관리 및 운영은 유럽, 특히 영국으로부터 형성된 국제기준을 대외적 측면에서 존중하면서도 자국 내 금 품질에 대한 독자적인 품질인증시스템의 성장을 추구하는 이중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평가됨
- 터키는 귀금속 품질 관리를 위한 별도의 홀마크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거래소에 금을 공급하는 업체가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짐
- LBMA의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적격생산업체와 터키 내 지정된 제련업체로부터 터 금 공급을 받음
- 거래소와 조폐국이 터키 내 제조된 골드바에 대한 품질검사를 비정기적으로 수행하여 품질유지를 책임지고 있음
- 지정된 제련업체는 제련업자 표시, 시리얼 넘버, 순도 표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이스탄불 금 거래소(IGE) 적격생산업체 관리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해외생산업체에 대하여는 영국 LBMA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한 적격 생산업체를 지정함

- 국내생산업자에 대하여는 지정요건, 심사, 제재 등에 대하여 독자적인 규정을 활용하고 있음
- 터키는 적격업체 지정 심사 시 기술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면서 품질에 대한 책임을 BIST 회원에게 부여하고 있음
 - 수입금의 경우 IGE 회원에게만 수입자격을 부여하고 수입금을 3영업일 이내에 IGE 금고에 입고하여야 함
 - 국내정련금의 경우 IGE가 지정한 제련업자가 정련한 금을 7영업일 이내에 IGE 금고에 입고하여야 함

4) 터키 현물금 시장 거래 현황

- <표 IV-5>는 터키 BIST 금 거래량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로 보여줌
 - 터키 BIST에서는 자국통화인 터키리라화, 미달러화, 유로화의 3가지 통화로 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 금 거래량 합계를 보면 2013년도 437.9톤을 거래한 후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2017년 다시 457.2톤으로 거래가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265.6톤으로 감소함

<표 IV-5> 터키 BIST 금 거래량: 2013~2018년

(단위: kg)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터키 리라화 (TL)거래량	27,446.87	19,305.61	10,698.26	20,734.23	59,005.44	43,072.53
미 달러화 (USD)거래량	408,350.95	221,318.52	244,473.17	221,784.46	397,969.02	218,566.30
유로화 거래량	2,080.02	506.74	63.68	29.03	250.59	3,975.20
거래량 합계	437,877.85	241,130.85	255,235.12	242,547.75	457,225.03	265,614.03

자료: BORSA iSTANBUL

- <표 IV-6>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터키 BIST 귀금속 거래량을 연도별로 보여줌
 - 2018년 기준으로 터키 BIST 귀금속 총거래량은 약 657톤이고, 이 중에서 금은 265.6톤, 은은 391.4톤을 차지함
 - 터키 BIST의 경우 귀금속 거래량은 대부분 금과 은의 거래량이 차지함
 - 우리나라도 금 현물시장 이외에 은을 비롯한 다른 귀금속을 상장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표 IV-6> 터키 BIST 귀금속 거래량

(단위: kg)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	437,877.85	241,130.85	255,235.12	242,547.75	457,225.03	265,614.03
은	465,662.82	438,275.82	499,667.08	481,170.49	390,276.74	391,397.72
귀금속 합계	903,540.68	679,409.60	754,903.67	723,723.01	847,511.02	657,068.05

자료: BORSA iSTANBUL

- <표 IV-7>은 2019년 기준으로 터키리라화를 사용하여 거래되는 터키 BIST 금 거래 현황을 월별로 보여주고 있음
 - 터키 BIST 금 현물시장에서 터키리라화를 사용하는 거래는 월평균 200건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져 2톤 정도의 금이 매매되고 금액은 50만터키리라 정도라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터키리라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더라도 터키 월 평균 거래량(약 2톤)은 우리나라 월 평균 거래량(2019년 기준 0.5톤)의 4배에 달하여 금 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표 IV-7> 터키 BIST 리라화 사용 금 거래 현황(2019년)

(단위: 리라, 톤, 건수)

	터키 리라화		
	총액	거래량	거래 수
1월	501,438.289	2.251	200
2월	358,006.631	1.598	167
3월	473,506.313	2.067	223
4월	484,696.614	2.048	216
5월	664,160.100	2.665	315
합계	2,481,807.947	10.629	1,121

자료: BORSA iSTANBUL

□ <표 IV-8>은 2019년 기준으로 미달러화를 사용하여 거래되는 터키 BIST 금 거래 현황을 월별로 보여주고 있음

- 터키 BIST 금 현물시장에서 미달러화를 사용하는 거래는 월 평균 518건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져 14톤 정도의 금이 매매되고 금액은 60만미달러 정도라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미달러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더라도 터키 월 평균 거래량(14톤)은 우리나라 월 평균 거래량 0.5톤의 28배에 달함

<표 IV-8> 터키 BIST 미달러화 사용 금 거래 현황(2019년)

(단위: 달러, 톤, 건수)

	미 달러화		
	총액	거래량	거래 수
1월	522,896.142	12.62	549
2월	581,580.016	13.719	297
3월	697,718.421	16.658	728
4월	680,369.335	16.454	647
5월	447,009.871	10.825	368
합계	2,929,573.784	70.276	2,589

자료: BORSA iSTANBUL

□ <표 IV-9>는 2019년 기준으로 유로화를 사용하여 거래되는 터키 BIST 금 거래 현황을 월별로 보여주고 있음

- 터키 BIST 금 현물시장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거래는 3가지 통화의 거래 중에 가장 적은 편임

<표 IV-9> 터키 BIST 유로화 사용 금 거래 현황(2019년)

(단위: 유로, 톤, 건수)

	유로화		
	총액	거래량	거래 수
1월	6,713.696	0.186	11
2월	5,536.427	0.149	5
3월	107,357.439	2.918	218
4월	9,047.399	0.246	11
5월	9,440.505	0.257	8
합계	138,095.466	3.755	253

자료: BORSA iSTANBUL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결제를 통해 유럽시장 소비자들에게 전면적인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결제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표 IV-10>은 2019년 기준으로 터키 BIST 금 거래 현황을 결제통화별과 총거래로 구분하여 거래량을 보여줌
-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합계하여 볼 때 현물 금 거래량은 미달러화 결제로 약 70톤, 터키리라화 결제로 약 11톤, 유로화 결제로 약 4톤 정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합계하여 볼 때 총거래된 현물 금 거래량은 약 85톤으로 보고됨
 - 동 거래량은 월 평균 거래량을 환산하면 약 17톤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월 평균 거래량 0.5톤의 34배에 이르는 거래량임

<표 IV-10> 터키 BIST 금 거래 현황(2019년)

(단위: 톤)

	터키리라화 결제분	미달러화 결제분	유로화 결제분	합계
1월	2.251	12.62	186	15.056
2월	1.598	13.719	149	15.466
3월	2.067	16.658	2.918	21.643
4월	2.048	16.454	246	18.749
5월	2.665	10.825	257	13.747
합계	10.629	70.276	3.755	84.661

자료: BORSA iSTANBUL

- <표 IV-11>은 터키 BIST 금 거래금액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로 보여줌
- 마지막 열에 나타나듯이 총거래금액을 미달러화로 표시하면 2013년도 196.6억 달러로 최고조에 이르다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100억달러 이하로 낮아졌음
 - 2017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184.8억 달러에 달하였다가 2018년에는 109.3억달러로 감소함

<표 IV-11> 터키 BIST 금 거래금액

(단위: 달러)

연도	리라화 결제분	미 달러화 결제분	유로화 결제분	거래액 합계 (미달러 환산분)
2013년	2,325,581,838.71	18,350,108,963.90	73,041,291.38	19,655,525,454.81
2014년	1,700,786,000.19	8,833,763,327.87	15,350,666.40	9,623,817,176.44
2015년	1,080,071,956.13	9,170,864,142.36	2,160,293.62	9,574,745,275.09
2016년	2,529,059,016.84	8,835,675,520.80	1,049,540.35	9,677,459,784.92
2017년	8,665,185,702.52	16,085,445,377.38	8,721,280.75	18,478,308,625.85
2018년	8,054,491,856.70	8,990,031,309.60	136,852,640.53	10,925,085,302.54

자료: BORSA iSTANBUL

□ <표 IV-12>는 터키 BIST 귀금속 거래금액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음

- 터키 BIST 귀금속 거래금액 중 금 거래금액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대표적인 거래 귀금속으로 금이 월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음
- <표 IV-6>의 귀금속 거래량을 보면 2017년을 제외하고는 은의 거래량이 금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있으나, 단위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의 거래금액이 압도적으로 나타남
- 금 거래금액을 미달러화로 표시하면 2013년도 196.6억달러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00억달러 미만을 유지함
 - 2017년에 다시 184.8억달러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 109.3억달러로 다시 감소함
- 은 거래금액은 2013년에 3.4억달러로 최고조에 달하였다가 감소추세로 2018년에는 약 2억달러에 머물

<표 IV-12> 터키 BIST 귀금속 거래금액

(단위: 달러)

연도	금 거래금액	은 거래금액	귀금속 거래금액 합계
2013년	19,655,525,454.81	341,001,119.02	19,996,526,965.26
2014년	9,623,817,176.44	265,385,758.44	9,889,293,059.60
2015년	9,574,745,275.09	254,202,968.55	9,828,976,804.00
2016년	9,677,459,784.92	265,580,898.18	9,943,166,031.76
2017년	18,478,308,625.85	212,085,385.17	18,690,657,010.83
2018년	10,925,085,302.54	198,434,897.77	11,125,161,378.67

자료: BORSA iSTANBUL

- <표 IV-13>은 터키 BIST 금 거래건수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로 보여줌
 - 터키 BIST 금 현물시장 거래건수는 결제통화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미 달러화로는 1만건 이상이, 터키리라화로는 2,000~3,000건 정도, 그리고 유로화로는 1백건 미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미달러화로 결제하는 거래건수가 1만건 이하였던 2014년과 2018년에 총거래건수도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음
 - 총거래건수는 2013년도 1만 5,398건이었다가 2014년 8,989건으로 감소함
 - 2015년 1만 3,675건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1만 6,400건으로 최고치에 이르다가 2018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1만 1,402건에 머무름

<표 IV-13> 터키 BIST 금 거래건수

(단위: 건수)

연도	리라 결제건	미달러 결제건	유로 결제건	합계
2013년	1,921	13,393	84	15,398
2014년	1,780	7,158	51	8,989
2015년	1,804	11,851	20	13,675
2016년	2,550	10,445	13	13,008
2017년	3,261	13,117	22	16,400
2018년	2,462	8,871	69	11,402

자료: BORSA iSTANBUL

- <표 IV-14>는 터키 BIST 귀금속 거래건수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음
 - 터키 BIST 귀금속 거래건수 중 금 거래건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대표적인 거래 귀금속으로 금이 월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금 거래건수는 2013년도 1만 5,398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8년 1만 1,402건이 됨
 - 터키 BIST 은 거래건수는 2016년을 제외하고는 1천건 이하여서 대부분 1만건 이상인 금 거래건수에 비해 상당히 작다고 할 수 있음
 - 터키 BIST 귀금속 총거래건수는 2013년도 1만 6,299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8년도 1만 2,377건에 머무름

〈표 IV-14〉 터키 BIST 귀금속 거래건수

(단위: 건수)

연도	금	은	귀금속 합계
2013년	15,398	899	16,299
2014년	8,989	861	9,854
2015년	13,675	904	14,585
2016년	13,008	1,533	14,548
2017년	16,400	899	17,305
2018년	11,402	952	12,377

자료: BORSA iSTANBUL

- 터키 다이아몬드 및 귀금속 시장에서 거래되는 귀금속 종류로 금, 은, 백금, 팔라듐 등이 있지만 귀금속 거래에서 거래금액, 거래건수 등에서 금이 월등한 비중을 차지함
 - 거래량에 있어서는 <표 IV-6>에서 보듯이 은의 거래량이 금의 거래량보다 많은데, 거래건수에서는 금 거래건수가 훨씬 많다는 것은 은의 경우 건당 거래량이 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은을 귀금속 시장에서 같이 거래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금 현물시장의 현황을 감안할 때, 당장은 어렵겠지만 금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은을 비롯한 다른 귀금속을 같이 상장하여 거래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 금에 대한 과세제도

가. 금 거래와 금 과세 개요

1) 금 구입방식

- 금은 여러 형태로 구입할 수 있음
 - 보석이나 주화같이 실물(physical) 형태로 구입
 - 모바일 지갑을 통한 디지털(digital) 형태로 구입

- 금(gold) 뮤추얼펀드(mutual funds), 금(gold)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s, ETFs), 금 국채(sovereign gold bonds, SGBs) 등에 투자하여 계약(contract) 형태로 구입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석, 주화, 골드바 등의 구입에 대해 보유기간 3년을 중심으로 3년 이하는 소득세로, 3년 초과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로 과세함
 - 자본이득이 비교적 단기인 3년 이하는 소득세로 과세함
 - 장기는 예를 들어 인도에서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의 20%를 과세하고 일정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4%의 추가과세를 부과하고 있음
- 그리고 금 구입 당시에는 일종의 부가가치세인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 GST)를 과세함
- 금 뮤추얼펀드나 금 상장지수펀드 등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환매(redemption) 시 과세는 보석 처분 시와 동일하게 취급함
 - 3년 이하 단기는 소득세로 과세함
 - 장기는 20% 과세하고 물가지수비용을 고려한 이득에 대하여는 추가과세함
- 금 국채(SGBs)로부터의 수익은 달리 취급하는데, 금 국채(SGBs)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함
 - 8년 이후의 만기금액은 만기 시 금 가격에 연동되는데 만기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면세됨
 - 그러나 5년 이후 해제시킬 수도 있는데 그때 자본이득은 20% 과세하고 물가지수비용을 고려한 이득에 대하여는 추가과세함

2) 금 실물거래

- 많은 투자자들이 상장지수펀드(ETF)보다는 실물 금과 은을 더 선호함
 -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의 조세 문제가 매우 평이한 것에 반해 많은 사람들이 실물 금지금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의 조세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

- 물질적 금이나 은의 판매에 대한 과세, 납세 신고 요건들, 비용기준 계산, 납세의무를 상각하는 방식 등을 고찰해야 함
- 실물 금과 은의 판매에 따른 과세 문제를 고려하여야 함
 - 금, 은, 백금, 팔라듐, 티타늄과 같은 귀금속의 실물 보유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IRS에 의해 소장품(collectibles)으로 특수하게 분류되는 자본자산으로 고려됨
- 미국에서는 골드코인, 골드바, 금괴 등 형태에 상관없이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임
 - 자본이득세는 보유물의 판매 이후에 적용되며 1년 이상의 보유물에 해당됨
 - 주식, 뮤추얼 펀드, 상장지수펀드 등 많은 거래가능한 금융증권들에 단기적 또는 장기적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실물 귀금속의 판매는 다소 다르게 과세됨
 - 금과 은의 실물 보유는 최대 28%의 한계세율과 동등한 자본이득세에 해당됨
 - 이는 33%, 35% 및 39.6% 세율 구간(tax brackets)에 있는 개인들이 실물 귀금속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지 28%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의미함
- 단기 보유에 따른 귀금속의 단기 이득에는 통상적인 소득세가 부과됨

3) 금 거래 납세신고 요건들

- 귀금속 판매에 따른 납세의무는 판매 즉시 발생되지 않고, 실물 금이나 은의 판매는 납세신고양식(tax return) 1040의 스케줄 D에 보고되어야 함
- 판매되는 귀금속의 유형에 따라 양식 1099-B가 판매 시 IRS에 제출되어야 판매가 소득으로 간주됨
- 납세신고가 필수적인 코인은 1965년 이전에 주조된 은 함량 90% 이상의 동전들 (10센트, 25센트, 50센트짜리 미국 동전), 캐나다 Gold Maple Leaf, 남아공의 Gold Krugerrand, 멕시코의 Gold Mexican Onza coins 등을 포함함
 - 1kg 또는 1,000 troy ounces의 골드바나 실버바 또한 신고가 필요함

- American Gold Eagle coin은 신고가 필요없음
- 이상에 관한 판매에 대해서는 세금이 통상의 소득세처럼 부과됨

4) 실물 금과 은의 비용기준

- 귀금속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은 귀금속의 비용 기준에 영향을 받음
 - 만약 귀금속을 구입한다면 구입 시 지불한 가격이 비용이 됨
 - 귀금속 검사비용 같은 비용을 미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비용에 더할 수 있음

- 만약 귀금속을 증여받았다면 비용은 증여자의 구입 당시 귀금속의 시장가치에 해당함
 - 증여 시 귀금속의 시장가치가 증여자가 지불한 것보다 적으면 비용기준은 증여 시 시장가치에 해당함

- 금이나 은을 상속받는다면 비용기준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의 시장가치에 해당함

5) 실물 금 과세 사례

- 예를 들어, 오늘 온스당 \$1,330의 가격으로 실제 금을 100온스 구입하고 2년 후 보유금을 온스당 \$1,500으로 판매하는 거래자의 소득세율 구간이 39.6%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할 수 있음
 - 구입 비용 = $(100 \times \$1,330) = \$133,000$
 - 판매 수입 = $(100 \times \$1,500) = \$150,000$
 - 자본이득 = $\$150,000 - \$133,000 = \$17,000$
 - 납부 세금 = $28\% \text{ (maximum percentage)} \times \$17,000 = \$4,760$
 -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소득세율 구간에 관계없이 실물 보유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율의 최대치(28%)를 적용하여 계산

- 이때 다른 수집품(collectibles)에 대한 자본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자본이득과 상계할 수 있음

- 만약 은 판매로 \$500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차감하여 \$4,260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미래로 손실을 이연할 수도 있음

나. 주요국 금 과세 현황

- ‘Buy Swiss Gold’ 웹사이트에 의해 정리된 주요 국가 금 관련 과세의 주요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이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과세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표 IV-15>는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 프랑스 등에서 스위스산 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소비자를 위하여 제공한 세금 관련 자료임
 - 대체적으로 실물 금을 팔 때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나 투자자의 거주지, 거래 발생지, 금 보관 장소 등에 의해 차이가 발생함

<표 IV-15> 주요국 금 과세 개요

국가	주요 정책방향	과세 현황
미국	- 미 국세청(IRS)은 금을 수집품으로 간주하고 자본이득에 대해 28%의 세금을 과세함 - 판매 당시의 실현 금액과 납세자의 기준금액 차이가 자본이득이나 손실이 됨	- 금, 은 매도 시 자본이득세 28% 적용
캐나다	- 캐나다 국세청(CRA)은 투자자들이 이득과 손실을 소득계정으로 간주할지 아니면 자본계정으로 간주할지 선택하도록 허용함	- 귀금속에 부가가치세 0% 적용 - 자본계정의 경우, 금 소유 첫 해에는 자본이득세를 50% 감면함
영국	- 영국에서는 자본이득세가 회계연도 내 10,100파운드 이상의 이윤을 실현하였을 때에만 과세함 - 그런데 이 한 번의 금 거래가 어떤 투자자에게는 해당 회계연도의 면세한도액을 구성할 수 있고 이때 다른 투자에서의 이윤에는 18~28% 세율로 과세할 수 있음	- 투자금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아일랜드	- 실물 금은 자본이득세에 해당하는 자산임 - 금은 25%의 자본이득세에 해당됨	
스위스	- 금은 과세가능한 자본의 일부로 간주되고, ISF신고에 귀금속을 포함해야 함	- 발행된 금화, 투자목적의 미세금, 정제나 복구를 위한 금에 대해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함
프랑스	- 귀금속은 ISF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34.5%의 이득세는 보유 3년 후부터 매년 10%가 감면됨	

다. 미국 귀금속 코인 및 금지금의 실체적 소유에 대한 조세

- 미연방정부의 조세체계에 따르면 실물 귀금속의 소유는 골드코인, 골드바, 귀금속 코인이나 금괴 등 형태에 상관없이 자본이득세를 적용함
 - 자본이득세는 장기적(long-term) 보유에 해당함
 - 단기적 보유에 대하여는 소득세로 과세함

1) 조세 적용

- 일반적으로 개인이 귀금속 코인이나 금지금을 실물 소유할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법규정은 없음
 - 일반적으로 귀금속 자산은 연방소득세 목적에서 수집품(collectibles)으로 간주
 - 따라서 귀금속 자산을 판매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20% 세율 대신에 28% 최고세율을 적용함
 - 귀금속이 수집품으로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을 가져왔다면 이에 대해 최고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취지임
- 투자자가 속하는 연방소득세 세율구간이 28%, 33%, 35%, 39.6%인 경우 귀금속자산을 포함하는 수집품(collectibles)으로부터의 순장기이득(net long-term gains)은 28%로 부과됨
 - 단 투자자가 39.6% 이상의 소득세율 구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3.8%의 순투자소득세가 추가됨
 - 금 등의 귀금속 보유는 자산투자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그만큼 금 거래시장 또한 활발하게 대규모로 운영되는 것이 미국시장임
 - 그러나 동시에 투자수단으로서의 금이나 귀금속은 다른 투자상품보다는 높은 세율이 적용됨
- 만약 투자자가 10%, 15%, 또는 25% 세율구간에 있다면 귀금속자산을 포함한 수집품으로부터의 순장기이득은 이들 10%, 15%, 또는 25%의 세율이 부과되며, 이 구간들에서는 3.8%의 순투자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이 세율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하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금이나 귀금속을 가치저장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과세 당국이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보관의 이슈

- 금을 포함한 귀금속자산을 직접 실물 보유할 경우에는 보관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함
 - 은행금고의 대출박스를 이용하는 것은 고비용의 보험커버리지를 가입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보관업체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때에는 보관업체와의 계약에 몇 개의 적격(outfits)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귀금속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분리된 기준에 따라 보유하는 방식과 여러 당사자가 집단적으로 보유하는 방식이 있으며, 방식에 따라 제반 행정사항에 차이가 나타남
- 첫째, 귀금속자산을 완전히 분리된 기준으로 보유할 수 있음
 - 이때에는 귀금속자산에 대한 소유권(title)을 보유하고 식별해야 하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보관되어야 함
 - 필요하면 자신의 골드코인이나 금지금을 언제라도 요청하여 보유할 수 있음
- 둘째, 할당보관(allocated storage)은 보관업체가 후견인으로 귀금속을 보유하고 고객은 집단적으로(collectively) 소유하는 것임
 - 이 경우 지분(share)이 혼합되어 있고 지분에 대한 증서를 갖게 됨
 - 실물 귀금속자산을 요구하면 지분을 실물 코인이나 금지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이 걸리게 됨
- 분리적 보관이든 할당보관이든 보험커버리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적격(outfits)을 구비해야 하는 권고사항이 있음

3) 과세 가능한 계좌에 있는 귀금속 ETF와 채굴주식

- 개인이 소유하면서 (과세가능한) 브로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귀금속 ETF 지분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장기자본이득은 표준적인 20% 세율 대신에 28%의 최대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됨
 - 이 경우에는 판매로부터의 이득이 수집품(collectibles)을 판매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간주되기 때문임
 - 단기이득은 개인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39.6%의 최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3.8%의 순투자소득세율도 추가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주(state) 소득세 또한 적용될 수 있음

- 개인이 소유하면서 (과세가능한) 브로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광업주(mining stocks)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20%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함
 - 단기이득은 개인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39.6%의 최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3.8%의 순투자소득세율도 추가될 수 있음
 - 귀금속 EFT 지분과 마찬가지로 주(state) 소득세 또한 적용될 수 있음

라. 세계 귀금속 과세제도 및 품질인증제도

1) 세계 귀금속 과세제도

- 귀금속에 대한 과세는 높은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과세이며, 동시에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과세라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프랑스는 금을 매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10.5%와 양도소득세 34.5%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도 낮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가 많음

- 유럽국가 대부분 금화와 금괴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금의 형태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경우 정제 직후 공급되는 귀금속에 대하여는 0% 세율이 적용되지만 특정 귀금속의 공급자에게는 면세가 적용되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 주얼리, 금, 플래티넘, 진주, 귀금속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세 면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터키는 금, 은, 플래티넘, 석유를 채굴, 관리, 정제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0%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음
- 주요국들의 귀금속 매매 시 부가가치세나 자본이득세 부과 세율을 살펴보면, 비교적 매수 시에는 면세이나 매도 시 부과되는 세율은 어느 정도 높다고 볼 수 있음
- 영국은 매도 시 자본이득세 18%를 부과함
 - 프랑스는 매도 시 부가가치세 10.5%, 자본이득세 34.5%를 부과함
 - 벨기에, 스위스, 독일은 매도 시에도 0% 세율을 유지함
 - 아일랜드는 매도 시 자본이득세 25%를 부과함
 - 미국은 매도 시 자본이득세 28%를 부과함
- 중국은 귀금속 매수 시 부가가치세인 증치세에 소비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함
- 중국의 귀금속 증치세 세율은 17%임
 - 금, 플래티넘, 다이아몬드를 포함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해 매출세액공제를 허용함
 - 투자금을 포함한 금을 수입할 때는 면세함
 - 금과 은의 주얼리 제품에 대해 5%의 소비세가 추가 과세됨
 - 진주, 보석, 옥돌 등 기타 주얼리에 대해서는 10%의 소비세가 추가 과세됨
- 터키는 기본적으로 귀금속 매매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 처리하고 있음
- 금, 은, 플래티넘을 추출 또는 정제하는 공급업체에 대해 0%를 적용함
 -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등의 귀금속 원석이나 가공처리하지 않은 금과 은의 공급에 대해서도 면제함
 - 또한 터키 국내에서 공급되는 가공되지 않은 금에 대하여 면제함

2) 세계 귀금속 품질인증제도

- 세계 금 시장의 대부분은 개별 금 제품에 대해 별도의 품질인증체계를 운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제공인의 적격생산업체로부터 금을 공급받아 금의 품질을 유지함
 - 영국 LBMA은 공인된 적격생산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감시시스템과 감독시스템을 운영하고 국제 품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 취소나 재검증 조치를 실시함
 - 인도, 터키, 중국 등 비교적 금 거래량이 큰 시장에서는 영국 LBMA의 적격생산업체의 품질을 인정하고 자국 내 제련업자의 추가인증을 병행하여 사용함

- 영국 런던금시장협회(LBMA)의 품질인증은 ‘LBMA 인도적합목록(good delivery list)’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 목록에 있는 기업을 생산적격업체라고 함
 - 신청기업의 지정심사는 신청기업의 분석능력과 생산된 금의 순도를 검증하는 방식임
 - LBMA 적격생산업체의 생산금은 업체 간 순도를 상호 인정하여 품질검사 없이 거래되는 것이 관례임
 - 물론 필요에 따라 품질검증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음
 - 적격생산업체의 관리는 3년마다 업체의 분석능력 및 생산된 금의 순도에 대해 사전적 모니터링을 실시함

- 중국 상해황금 거래소(SGE)는 장내 현물거래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체 현장심사를 수행하여 품질인증을 함
 - ‘표준금괴생산 및 금괴품질자격’에 따라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심사를 통해 적격생산업체를 지정함
 - 생산금의 순도검증은 중국의 국가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함
 - 품질문제로 인한 법률상 책임은 표준금괴생산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수입금의 경우 은행인 회원, 국내금의 경우 표준금괴생산기업인 회원만이 입고 가능하며 입고회원이 품질을 보증함
 - SGE는 표준금괴생산기업에 대해 수시점검 및 필요조치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감독 및 결과를 공시하고 있음

- 순도나 중량 미달 시 기한 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1개월 거래정지, 벌금부과, 표준금괴생산자격 자격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터키의 이스탄불금 거래소(IGE)는 장내 현물거래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국 LBMA 인도적합목록에 있는 적격생산업체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적격업체 심사 시 기술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품질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수입금의 경우 IGE 회원에게만 수입자격을 부여하고 수입금을 3영업일 이내 IGE 금고에 입고하도록 의무조항을 둠
 - 국내정련금의 경우 IGE가 지정한 제련업체가 정련한 금을 7영업일 내 IGE금고에 입고하도록 의무조항을 둠
 - 국내 정련업자에 대해 3년마다 기술요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관리하고 있음
 - 또한 IGE는 조폐국과 함께 매년 5회의 불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중국은 SGE에 공급되는 금에 대한 적합 여부를 품질 검사하는 기관으로 ‘국가금은제품 품질감독및검사센터’를 운영 중이고 귀금속 순도규정 표준들을 충족할 경우 홀마크 인증을 함
 - 터키는 홀마크 관련 법제가 없어 거래소에 금을 공급하는 회원을 영국 LBMA 적격생산업체나 자국 내 지정제련업체로 한정하고 회원이 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3. 정책적 시사점

가. 터키 사례

- 터키시장의 경우 금 거래소 개설 이후 터키 금 시장 및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음
 - 현물 거래소에서 결정되는 금 가격이 터키 국내 금 시장의 거래 기준지표로 사용되어 금 가격 신뢰도가 제고됨

- 다수 국민들이 금을 투자수단으로 인식하고 금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금 시장 확대를 위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함
 - 품질 보증된 금의 유통을 촉진시킴으로써 금 상품의 품질 표준화 및 제고가 발생함
- 터키 금 시장의 제도적 측면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 공식적인 금 거래소를 통한 금 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밀수 및 탈세의 근본 유인을 제거함
 - 거래소 회원에게만 금 수입 자격을 부여하고 수입금은 무조건 금 거래소로 입고하도록 함
 - 결제일을 다양화함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 야간 거래를 통해 24시간 항시 금 거래가 가능함
 - 가격제한폭을 국제 금 시세에 연동함으로써 국내외 가격 괴리 현상을 차단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나. 중국 사례

- 중국 상해황금 거래소(SGE)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음
- 거래소 시장에 대한 세제혜택
 - 대형업체 위주의 참가로 인한 신뢰성 확보
 - 은행예치를 이용한 인수도 편리성 제고
 - 투자수요 흡수를 위한 이연제도 활용
- 상해황금 거래소는 거래소 시장을 통한 금지금 매매 시 증치세 17%를 면제하고 있음
- 거래소 시장에서 매입 시 매입 자료의 증빙에 편리함 확보
 - 금지금 매도 시 또는 가공 후 금제품 판매 시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증치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
 - 거래소 거래는 범규상 납세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납세 절차를 생략하여 편리성을 제고하고 있음
 - 장외시장 거래에서는 금 증치세 납부와 매입 및 매도 근거자료 증빙을 요구함

- 상해황금 거래소는 은행, 대형 제련업자 등 대형 업체들이 회원으로 참여함
 - 대형 업체 위주로 거래소 시장을 설계하여 각종 위험을 제어함
 - 위변조 및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어 거래소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함

- 상해황금 거래소는 금지금 인도의 원활화를 위해 전국 차원의 은행권에 현금예치 금고를 설치하여 금지금 예탁창고로 활용하고 있음
 - 거래소는 41개 은행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금의 입고 및 출고 내역을 확인함
 - 거래소가 은행 간 금괴 이동 및 예탁수량 조정을 조율함
 - 고액거래의 경우에는 거래회원을 통해 금지금 인출시점 및 인출장소를 선택할 수 있음

- 상해황금 거래소는 이연제도를 이용한 거래를 상장하여 투자수요 흡수를 제고하고 있음
 - 거래소가 가격 차액을 매일 정산하여 포지션을 이연하는 T+D거래를 상장함
 - T+D거래의 상장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여건에 상관없이 금 투자 수요를 거래소에서 유효화하도록 유도함

- 상해황금 거래소의 품질관리는 엄격한 회원제 운영으로 유지됨
 - 수입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국내금에 대해서는 대형 제련업체들로 이루어진 회원들만이 금지금의 입고가 가능하고 입고 회원이 금지금의 품질을 보증함
 - 입고 회원은 대형업체로 자체적으로 금 품질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할 유인이 있음
 - 개인 등은 금 매도를 위한 입고를 불허하고 있는데 주로 세금이나 순도의 문제로 입고를 불허함
 - 금지금 제련업체에 대해 국영기관인 4개의 인증기관이 1년에 1회씩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거래소는 부정기적으로 제련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함

- 중국의 또 하나의 특징은 대형은행이 금 현물시장을 조성한다는 것임
 - 9개의 대형 은행이 금지금의 수출입을 통제함
 - 중국 국내외 금 가격 괴리 시 차익거래 수행 및 시장조성이 가능함

- 중국의 귀금속 판매업체의 대형화도 금 시장 활성화의 주요인으로 간주됨
 - 중국의 귀금속 판매업체는 백화점 또는 대형 소매점으로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로 금의 품위, 중량, 공임을 표기하고 있음
 - 판매업체의 체인점화 및 대형화를 통해 브랜드 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황금협회는 귀금속 제품별로 순금 함량, 중량, 공임비, 크기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중국 사례의 경우 세제혜택 확대, 대형업체 위주의 시장 형성을 통해 시장 유동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이루었다고 판단됨
 - 또한 귀금속 판매상의 대형화 및 품질표시제 유도를 통해 금 산업 발전을 촉진하였음

V. 금 현물시장 조세특례 제도



V. 금 현물시장 조세특례 제도

1. 제도 연혁

- 한국거래소(KRX)의 금 시장 개설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V-1>과 같음
- 2007년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귀금속·보석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
 - 2010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품(금)거래소 도입방안」을 통해 한국거래소 내 금 현물시장 개설 및 조세 지원 정책 등에 대해 발표

<표 V-1> KRX 금 시장 개설 연혁

일시	내용
2007년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 「귀금속·보석 산업 발전방안」 발표 - 후진적 금 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 금 거래소 설립 및 유통 구조 혁신이 필요한 상품에 대한 상품거래소 도입 검토 발표
2009년 11월	위기관리대책회의, 「상품거래소 설립방안」 토의 - 금 등 가능한 품목부터 도입하여 취급상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
2010년 6월	관계부처 합동, 「상품(금)거래소 도입방안」 발표 - 한국거래소 내 금 현물시장을 개설하고 거래소 금지금 부가세 면세, 관세율 인하, 법인세(소득세) 경감 등의 지원책 발표
2013년 6월	금융위 주관, 금 현물시장 개설을 위한 T/F 운영 - 세제지원, 품질관리, 금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실물사업자 지원 및 참여유도 방안, 업무규정(약관) 내용 등 논의
2013년 7월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방안」 발표 -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시장 개설
2013년 7월	KRX, 「금 현물시장 개설 및 활성화 방안」 발표
2013년 11월	KRX,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 세부 개설일정」 발표
2014년 3월 24일	KRX 금 시장 개장 - 한국거래소와 다른 민간 유통업체와 상호가 유사하여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KRX 금 시장」 상표를 출원 - 1kg 종목 거래
2017년 9월 27일	100g 종목 추가 상장

- 2013년 7월 당정협의를 거쳐 금 거래를 양성화하고 왜곡된 유통체계를 혁신하여 귀금속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방안」을 발표
- 2014년 3월 KRX 금 시장을 개장하여 1kg 종목을 상장하였으며, 2017년 9월 100g 종목을 추가 상장함

2. 제도 내용

- 2014년 3월 24일, KRX 금 시장을 개설함에 따라 금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KRX 금 시장을 이용함에 따라 거래금액이 노출되는 것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인세) 일부를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도입함(「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8항은 금 거래소(금 현물시장)에 대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체 매출액 대비 거래소 이용금액의 증가분이나 매출액 대비 거래소 이용금액의 100분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9항은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 즉, 실물사업자의 경우 KRX 금 시장에서 이용하는 거래 금액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부 공제받고, 수입업자는 시장 매매를 위해 수입하는 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게 됨
 - 이러한 조세특례사항 중 실물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및 관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2019년 12월 31일)로 도래할 예정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8항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의 수혜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 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약관에서 정한 금지금 공급사업자와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수한 사업자(이하 금지금매수사업자)임
 - 감면 대상은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매매거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임

- 금지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순도 99.99% 이상인 원재료 상태의 금괴(덩어리), 골드바 등을 의미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상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에 대한 관세율을 0%로 감면
 -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법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거래소 이용 실적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 한국거래소 이용 금액 또는 이용 금액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형태로 지원
 - 장내 거래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 매도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 단 부가가치세는 금 현물을 인출할 경우 10% 부과
- 관세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적격금지금 수입업자가 KRX 금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관세(3%)를 면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9항)
 - 관세 면제 조건의 경우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적격금지금 수입업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관세 면제 추천을 받은 후 한국거래소가 정한 수입금지금리스트에 있는 금지금을 수입해야 함
 - 이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1일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보안운송업체를 통해 보관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임치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17항, 「KRX 금 시장 운영규정」 제34조)
 - 적격금지금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에 KRX 금 시장에서 매도해야 함
 - 3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거나 양도·임대 또는 보관기관에서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았던 관세를 징수하게 됨(「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10항 및 제1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17항)
-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 공제의 경우 실물사업자의 금지금 실물 인수도와 관련된 KRX 금 시장 이용정도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세액공제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8항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적격금지금생산(수입)업자(금지금 공급사업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한 금액 및 실물사업자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인출한 금지금에 대한 매수금액에 대해서 ① 또는 ②에서 선택하는 금액을 공급일 또는 매수일¹⁷⁾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단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전년 과세연도의 이용금액보다 적은 경우 ②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 ① 산출세액 × (KRX 금 시장 이용금액 전년대비 증가액 / 매출액)
 - ② 산출세액 × {(KRX 금 시장 이용금액 × 5%) / 매출액}
- 부가가치세의 경우 KRX 금 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 시 면제됨(「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1항)
 -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 공급업자가 KRX 금 시장에서 매도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적격금지금 공급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됨(「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2항)
 - 반면 금지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과세함
 - KRX 금 시장에서 매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금지금 실물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10%)가 부과(「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4항)
 - 실물사업자는 금 거래계좌(「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의 금 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 일반투자자는 KRX 금 시장의 일반회원인 증권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실물사업자가 금 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하면 됨(「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4항 및 제5항)
 - 금지금 실물을 인출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하는 금지금의 수량을 곱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9항)

17)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의미함

3. 과세특례 금액 추이

□ 금지금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특례 금액 추이는 다음의 <표 V-2>와 <표 V-3>과 같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세액공제신청서」상의 연도별 공제세액금액으로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됨
- 금지금 소득세의 경우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2016년 1명에 불과하며, 공제세액은 855,002원임
- 금지금 법인세의 경우 2015년 3,400만원에서 2018년 1억 4,000만원으로 공제세액이 증가하였으며, 신고 법인 수도 1개에서 3개로 증가하였음

<표 V-2> 금지금 소득세 과세특례 금액

(단위: 원,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제세액	-	-	855,002 (1)	-

주: 1. ()는 신고자 수
2. 귀속 소득세 신고 기준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표 V-3> 금지금 법인세 과세특례 금액

(단위: 백만원, 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p)
공제세액	34 (1)	23 (1)	37 (4)	140 (3)

주: 1. ()는 신고 법인 수
2. 각 해당연도 법인세 신고 기준
3. 2014. 1. 1. 이후부터 적용되어 2015년 신고분부터 통계 생산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연도별 금지금 입치 및 반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V-4>와 같음

- 「금지금 보관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금지금 공급자는 금 현물시장에 공급하는 금지금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입치하여야 함

- 연도별 금지금 입치 수량 합계를 살펴보면, 2014년 817개(1kg 기준)에서 2017년 2,411개(1kg 기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1,982개(1kg 기준)로 감소함을 볼 수 있음
- 연간 입치 횟수의 경우에도 1kg 기준으로 보면 2017년 124회에서 2018년 54회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음
- 인출 수량 합계 및 연간 인출 횟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17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감소함
- 이와 같이 2018년에 전반적으로 입치 및 인출 추이의 감소는 국내 귀금속시장 침체 및 국내 금 생산량 감소에 기인함

<표 V-4> 연도별 금지금 입치 및 반환 추이

(단위: 개, 회)

연도	단위	입치 수량 합계	연간 입치 횟수	인출 수량 합계	연간 인출 횟수
2014년	1kg	817	69	110	34
2015년	1kg	1,429	121	135	51
2016년	1kg	1,552	84	772	205
2017년	100g ¹⁾	778	3	472	9
	1kg	2,411	124	1,714	314
2018년	100g	256	4	133	22
	1kg	1,982	54	1,385	210

주: 1) 2017년 9월 27일부터 미니금(100g) 시장이 개장됨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내부자료

□ 연도별 금 현물시장 금지금 관세 감면 현황(관세청 신고 기준)을 보면 다음의 <표 V-5>와 같음

- 관세 감면 주체는 한국거래소 약관에서 정한 금지금 공급 및 수입업체 중 한국거래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함
 - 감면 대상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금지금을 대상으로 함
 - 단 수입신고수리일의 다음날까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입치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 매매거래를 해야 함

- 관세 감면 대상 금지금의 신고 수량 및 감면 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1,442kg 대상으로 약 19억원의 관세를 감면받았으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반입건수는 34건이며, 총신고중량은 2,190kg, 총관세감면금액은 총 29억원임

<표 V-5> 금 현물시장 금지금 관세 감면 현황(관세청 신고 기준)

(단위: 건, kg, 백만원)

세관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반입건수	-	-	3	9	22	34
신고중량	-	-	220	528	1,442	2,190
과세가격 ¹⁾	-	-	9,702	23,701	64,528	97,931
관세감면금액	-	-	291	711	1,936	2,938

주: 1) 과세가격은 원화 환산 기준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 한국거래소 실거래 기준으로 관세 면제액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V-6>과 <표 V-7>과 같음
 - 금 수입업자가 KRX 금 시장에 공급한 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은 수량은 2018년까지 총 2,043kg(총 2,458천달러)임
 - 2018년 KRX 금 시장 내 수입금 입고량(1,442kg)은 총입고량(2,007kg) 대비 약 71.8% 수준, 2018년 총누적거래량(4,777kg) 대비 약 30.2% 수준에 해당함
 - 적격수입업체인 삼성금 거래소는 2018년까지 총 790kg의 관세 면제금을 수입하여 KRX 금 시장에 공급하였고, 한국금 거래소쓰리엠은 총 1,253kg를 수입하여 공급함

<표 V-6> KRX 금 시장 수입금 입고량 추이

(단위: kg,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금 시장 입고량	1,552	2,606	2,007
수입금 입고량	120	481	1,442
수입금 비중	7.7	18.5	71.8

자료: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표 V-7> 관세 면제금액 현황(한국거래소 실거래 기준)

(단위: kg, 달러, 천원)

적격수입업체	주 수입처	수량	수입금액	면제금액(3%)
삼성금 거래소	홍콩	790	34,843,805 (31,283,977)	1,045,314 (938,519)
한국금 거래소쓰리엠	호주, 스위스	1,253	55,493,707 (50,647,377)	1,664,811 (1,519,421)
합계		2,043	90,337,513 (81,931,354)	2,710,125 (2,457,941)

주: ()는 달러 금액
자료: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4.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¹⁸⁾

- 현재 KRX 금 시장에 금지금 공급사업자가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7 제2항)
 - KRX 금 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분기별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때문에 매입 시 납부한 부가세액을 실시간으로 환급받지 못함
 - 예를 들어 7월에 금지금을 입고할 경우 3분기 환급신청을 10월 25일까지 한 후 11월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환급되어 약 4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음

<표 V-8> 금지금 공급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유형

구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유형
적격금지금생산업자	금지금 생산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적격금지금생산업자(제련업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70%
적격금지금생산업자(정련업자)	- 고금 매입 시 금 거래계좌에 입금한 매입세액 - 금 스크랩 매입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입된 매입세액
적격금지금유통업자	금지금 유통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적격금지금 수입업자	금지금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자료: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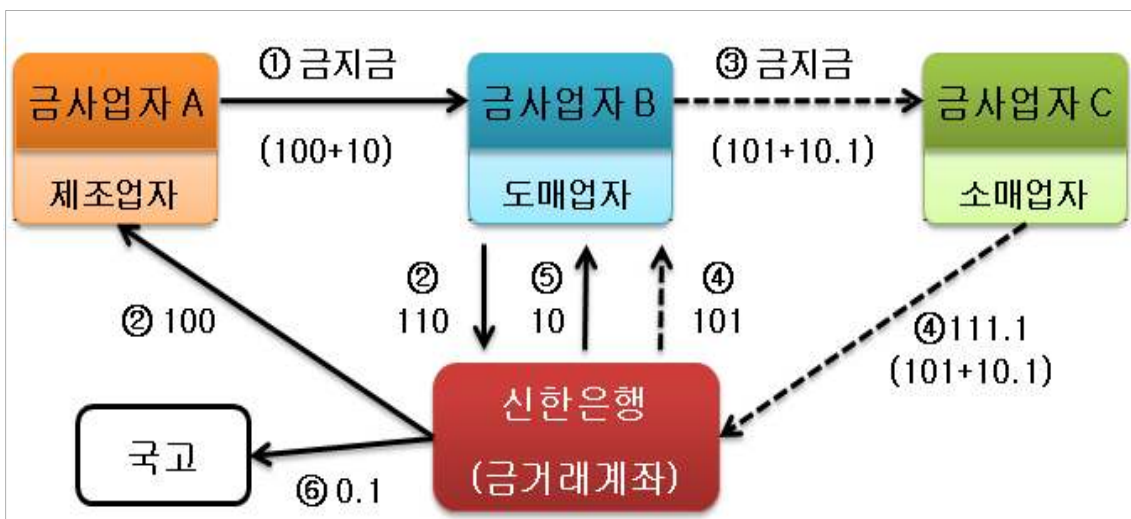
18)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및 홍범교·김재진(2015), pp. 161~162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 금지금 공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매도할 경우 거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자금이 묶이게 되어 장내매도에 참여하면 불리한 상황임
 - 즉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추가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여유자금이 부족하여 장내거래 참여 자체가 어려워지게 됨

□ 반면 장외거래의 경우 금 거래계좌¹⁹⁾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관리하는 신한은행이 금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환급해주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KRX 금 시장에 매도한 공급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장내거래 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환급이 불가하여 장내외 거래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
 - 즉 장내거래 시 부가가치세 면제로 매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임
- 아래의 [그림 V-1]을 보면, 매출자(금 사업자 B)가 매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①)을 금 거래계좌를 통해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을 해줌(⑤)
 - 그러나 [그림 V-2]를 보면 장내거래의 경우 실시간 환급이 되지 않는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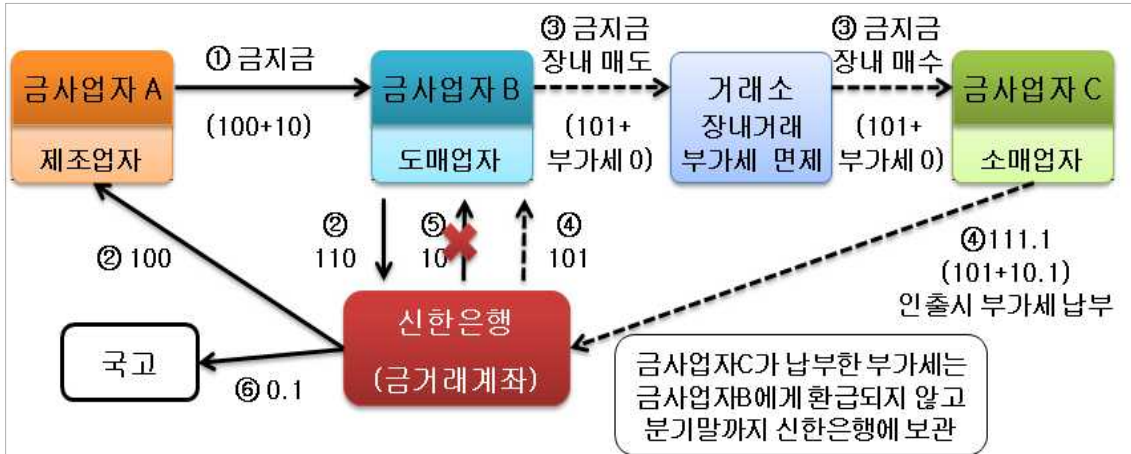
[그림 V-1] 장외거래 시 금지금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환급절차



자료: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19) 2008년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을 위해 신한은행 등이 관리하는 금 거래 전용계좌를 의미함

[그림 V-2] 장내거래 시 금지금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환급절차



자료: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나. 장외거래와의 비교

- KRX 금 시장의 장점은 한국거래소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결제 위험이 낮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금 투자방법인 KRX 금 시장 매매, 금 실물 매매(금은방), 골드뱅킹, 금 신탁 등 여러 가지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인 국제 도매가격 수준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KRX 금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가격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 트레이딩 시스템 구축 및 이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인출 장소 제한, 인출 단위 제약, 거래 노출 등 추가적인 비용 부분이 존재함
 - 관련 업계에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혜택이 장외거래에서 거래 시 가격 네고 등에 따른 프리미엄에 비해 큰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장내거래보다는 장외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 또한 KRX 금 시장에 공급한 이후 실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비용을 업체에서 지불하고 주기적으로 품질보증기관에 품질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비용 부담도 장내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한국거래소에서는 금 실물 인출의 편의성 제고 및 협의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제도를 개선한바 있음

- KRX 금 시장에서 인출 및 반환장소가 기존에는 동일하였으나, 실물인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15년 7월 개관한 서울주얼리지원센터 내 금인출센터를 유치, 9월 1일부터 금 인출서비스를 개시함
 - 또한 2015년 8월부터 대형 실물사업자를 위한 협의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가격으로 대량 거래를 원하는 대량매매 수요자의 매매 편의를 도모함
- KRX 금 시장에서의 입치(입고)는 금지금 공급사업자가 매매를 위해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지금을 최초 입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환은 해당 사업자가 매매 전 인출하는 것을 의미함²⁰⁾
- 입치장소는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이며, 반환장소는 한국예탁결제원 본원(부산), 사무소(서울), 지원(광주, 대전) 및 고객지원센터(대구, 전주), 서울주얼리센터(종로)
 - 인출은 매매거래개시 시점(오전 9시)에 체결된 거래분에 대하여는 당일 오후 1시까지 인출신청한 경우 당일 인출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인출청구일 익일부터 인출이 가능함
 - 이는 인출장소를 서울사무소로 한 경우에 한하며, 인출장소는 반환장소와 동일함
- 협의대량매매제도는 거래당사자가 가격 및 수량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청한 경우 해당 요건에 부합하면 거래를 체결시켜주는 제도임²¹⁾
- 즉 수입, 제련, 도매, 정련, 전기전자 소매업, 세공 등 금 실물사업자 간 1kg 단위로 경쟁매매시간 중 협의된 내용(거래상대방, 수량, 가격 등)을 KRX 금 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임
 - 동 제도는 KRX 금 시장에서의 인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량매매 수요자의 매매 편의를 제공함에 따라 거래활성화 및 유통업자 등 실물사업자의 참여 제고를 목적으로 2014년 7월부터 도입 검토 후 2015년 8월 3일부터 시행됨

20) <http://regulation.krx.co.kr/contents/RGL/04/04010105/RGL04010105.jsp>(검색일자: 2019. 6. 25)

21) 홍범교·김재진(2015), p. 159, <http://regulation.krx.co.kr/contents/RGL/04/04010107/RGL04010107.jsp>(검색일자: 2019. 6. 25)

- 협의대량매매 신청 요건은 아래의 <표 V-9>와 같음
 - 협의대량매매 대상 상품은 순도 99.99%의 중량 1kg과 100g의 금괴 및 골드바이며, 100kg 한도 내 1kg 및 100g의 배수 단위로 신청이 가능함
 -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이며, 가격 표시 및 호가 단위는 경쟁매매와 동일함
 - 현재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주), 미래에셋대우증권(주), 삼성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한국투자증권(주) 등이 있음

<표 V-9> 협의대량매매 신청 요건

구분	내용	비고
대상상품	순도 99.99%, 중량 1kg, 100g의 금괴(덩어리) 및 골드바	경쟁매매와 동일
신청가능수량	1kg 및 100g의 배수 단위, 100kg 한도 내	
신청시간	매매거래시간 중 단일가호가시간을 제외한 시간	09:00~15:20
가격표시	1g당 원화	경쟁매매와 동일
호가단위	10원	경쟁매매와 동일
가격범위	당일 하한가 이상 상한가 이하의 가격	

자료: <http://regulation.krx.co.kr/contents/RGL/04/04010107/RGL04010107.jsp>(검색일자: 2019. 6. 25)

- 연도별 협의대량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 현재까지 협의대량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6월 현재까지 협의대량 매매 거래량은 총 1,207kg이며, 거래대금은 539억원, 체결건수는 총 61건임

<표 V-10> KRX 금 시장 연도별 협의대량매매 현황

(단위: kg, 억원, 건,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합 계
전체 시장	거래량	4,380	5,603	4,777	2,948	17,708
	거래대금	2,053	2,568	2,148	1,435	8,204
	체결건수	75,832	87,908	69,492	51,410	284,642
협의 대량	거래량	123 (2.81)	416 (7.42)	575 (12.04)	93 (3.15)	1,207 (6.82)
	거래대금	54 (2.63)	185 (7.20)	256 (11.92)	44 (3.07)	539 (6.57)
	체결건수	11 (0.01)	25 (0.03)	17 (0.02)	8 (0.02)	61 (0.02)

주: ()는 전체시장 대비 비중
자료: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 거래량의 경우 2016년 123kg에서 2018년 575kg로 2016년 대비 367.5% 증가함
 - 2016년 전체시장 대비 2.81%의 비중에서 2018년에는 12.04%로 2016년 대비 9.23%p 증가함

다. 세제혜택 산출 문제

- 현재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의 경우 실물사업자의 KRX 금 시장 이용정도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8항에 의거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KRX 금 시장 이용금액의 증가분 또는 이용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선택하여 매출액 대비 비율을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감면하고 있음
 - 이는 KRX 금 시장 이용 최초연도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이용금액의 전체 비율로 감면되기 때문에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크며, 이후부터는 증가분에 대한 감면으로 세제혜택이 감소하게 되어 실물사업자들의 시장 참여 유인이 적다고 볼 수 있음

5. 효과성에 대한 평가

- 금 시장의 양성화라는 정책목표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라는 점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동 제도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동 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항목의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약 7.5억원, 2018년 약 21억원으로 이는 다른 조세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음

<표 V-11> 조세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득세	-	0.86	-	-
법인세	34	23	37	140
관세	-	291	711	1,936
합계	34	315	748	2,076

자료: 국세청, 관세청 내부자료

- 현재 KRX 금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의 경우 2016년에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표 V-12> KRX 금 시장 거래 현황

(단위: 건, kg,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평균 거래건수	104	183	308	372 <358>	285 <277>
일평균 거래량	5.6	8.9 (58.9)	17.8 (100.0)	23.1 (29.5)	19.6 (△15.1)
일평균 거래금액	2.4	3.8 (58.3)	8.4 (121.1)	10.6 (22.9)	8.8 (△16.7)
연간 누적거래량	1,055.4	2,211.3 (109.5)	4,380.1 (98.1)	5,604.1 (27.9)	4,777.7 (△14.7)

주: 1. 2017년부터 100g 골드바 거래를 시작함. < >안의 숫자는 1kg 골드바 거래 건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부분이 1kg 골드바 거래임을 알 수 있음

2. ()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거래소

- KRX 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금지금 공급자인 실물사업자가 매도 주체, 개인투자자가 매수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
 - 2016년 7월부터 수급개선을 위해 도입된 LP제도로 기관의 비중이 2016년부터 시장초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함

<표 V-13> KRX 금 시장 거래 참여자

(단위: kg, %)

구분	개인			실물사업자			기관		
	매도	매수	합계	매도	매수	합계	매도	매수	합계
2014년	178 (17.0)	975 (92.4)	1,154 (54.7)	876 (83.0)	79 (7.6)	955 (45.3)	0 (0)	0.73 (0.07)	0.73 (0.03)
2015년	671 (30.4)	2,035 (92.0)	2,706 (61.2)	1,538 (69.6)	175 (8.0)	1,713 (38.8)	1.4 (0.06)	0.7 (0.03)	2.1 (0.05)
2016년	2,336 (54.8)	3,242 (76.2)	5,578 (65.5)	1,625 (38.2)	715 (16.8)	2,341 (27.5)	287 (6.7)	288 (6.8)	575 (6.8)
2017년	2,332 (44.9)	3,046 (58.7)	5,378 (51.8)	2,221 (42.8)	1,534 (29.6)	3,755 (36.2)	628 (12.1)	545 (11.6)	1,173 (11.8)
2018년	1,905 (45.3)	2,381 (56.7)	4,286 (51.0)	1,719 (40.9)	985 (23.5)	2,705 (32.2)	575 (13.7)	833 (19.8)	1,409 (16.8)

주: ()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거래소

- 연도별 총금지금 수입은 2017년에 예외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관세면제 금지금은 2018년에 크게 증가함
 - 관세특례를 이용한 수입금이 전체 수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2017년에 2% 내외에 머물던 것이 2018년에 24.2%로 크게 증가함
 - 그러나 KRX 입고 금지금의 총수량은 2017년 2,488kg에서 2018년 2,007kg으로 오히려 감소했음을 감안하면 국내 금 공급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수입금 입고 증가라고 볼 수 있음

〈표 V-14〉 금지금 수입량 및 KRX 입고량 추이

(단위: kg,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수입금지금(A)	5,929	6,411	6,179	23,156	5,947
관세면제 금지금(B)	-	-	120	481	1,442
FTA 수입금(C)	361	536	639	364	335
수입금 입고량(B+C)	361	536	759	845	1,777
B/A	-	-	(1.9)	(2.1)	(24.2)
(B+C)/A	(6.1)	(8.4)	(12.3)	(3.6)	(29.9)
국내금입고량(D)	456	893	793	1,643	230
총입고량(B+C+D)	817	1,429	1,552	2,488	2,007

자료: 관세청, KRX

- 앞서 제II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RX 금 시장은 개설 이후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① 유동성 확대 및 국내시장 수급 안정화

- KRX 금 시장 개설 이후 정부의 금 현물시장에 대한 세제혜택 및 거래수수료 면제 등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실물사업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개인투자자의 금 보유량도 확대되기 시작함
- 또한 일시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KRX 금 시장을 통한 수입금 공급의 확대를 통해 국내 금 시장의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바 있음

② 금 시장 양성화 진전 및 질적 성장

- 금 시장 개설 이후 2019년 6월까지 약 9,038kg이 입고되어 약 21톤(약 9,592억원)이 거래됨에 따라 국내 금 시장의 양성화를 도모함
- KRX 금 시장 가격이 국제 금 시세 대비 100.18~100.35% 사이로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KRX 금 시장 참여 시 소액으로도 품질이 보장된 금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게도 새로운 투자 및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③ 외환보유고 증대 효과

- 누적 금지금 잔고량(연말 종가 기준)을 살펴보면 2018년 말 기준 4,817kg으로 KRX 금 시장 개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이는 한국은행의 2018년 말 기준 금 보유량 104.4톤 대비 4.6%에 해당하는 수치로 KRX 금 시장에 누적되는 금지금 잔고가 부수적으로 대외 지급수단의 추가 확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옴

④ 현물 기준 가격으로서의 역할

- KRX 금 시장 가격은 국제 금 시세 대비 100.19~100.35%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국제 금 시세 등락폭 및 추세와 거의 일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함
- 장외시장의 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가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금 세공업자 등의 매입원가 절감에도 기여함

□ 따라서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 금 시장의 양성화를 상당히 진전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KRX에서 추정하는 국내 금 시장 규모는 연간 120~150톤 정도이고 음성시장의 규모는 연간 55~70톤 정도인데, 금 현물시장에서의 연간 누적 거래량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추정 거래량의 3.2~4.8%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금 현물시장이 충분히 양성화되었다고 되었다고 보기는 무리임

□ 금 시장의 양성화는 세제지원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봄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세제지원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양성화 정도와 조세특례지출 금액(이용도)을 감안할 때, 동 특례조항이 현재 시점에서 금 시장의 양성화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함
- 그러나 동시에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 것은 금 시장 양성화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 첫째, 개설 이후 5년의 기간이 금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인가?
 - 둘째, 금 시장의 양성화라는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감안할 때, 다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세제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

VI. 정책 대안 및 결론



Ⅵ. 정책 대안 및 결론

1. 정책 대안

- 시행 후 5년째를 맞이하는 동 조항을 통하여 금 현물시장이 충분히 양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한편으로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금 현물시장의 성장이 더딘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 공급업자들이 기존의 도매 방식으로 거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KRX 금 시장을 이용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임
 - 즉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면 대량거래가 가능하고, 인수 및 인도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며, 시장 지배력에 의한 프리미엄 가격을 수취하는 것도 가능함
 - 거래제도가 불투명할수록 시장 지배력을 가진 참여자가 유리한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함
 - 반면 장내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모니터링할 인력과 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실물 금지금보다 작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²²⁾ 자금 회수도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지는 등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음
- 금 현물시장의 양성화라는 정책목표는 명분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명제임을 감안한다면, 현재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해서 당장 소득세·법인세·관세에 대한 조세특례를 폐지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함

【제1안】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은 일몰 종료하고, 관세 감면 혜택은 2년 일몰 연장하는 방안

- 관세를 면제하게 되면 국내외 금 수급상황에 따라 수입을 통한 공급량 조절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되는 장점이 있음

22) 예를 들어 실물로 1kg짜리 금지금을 임치하면 1g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1kg이 전부 팔릴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됨

- 따라서 상대적으로 특례 이용 실적이 큰 관세는 유지하고, 이용 실적이 미미한 나머지 두 세목의 혜택은 폐지하는 방안
- 5년의 기간이 현물시장 양성화의 충분한 기간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동안 2차례의 일몰 연장 이후에도 소득·법인세 감면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이용도를 감안하여 조세특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 세목의 혜택을 폐지
 - 조세특례조항은 일단 입법화되면 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은 특례조항을 상황에 따라 바로 정리하는 것도 정책적인 장점이 있음
- 금의 밀수는 국내외 금 가격 차이에 따른 예상 수익과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에 따른 예상 비용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됨²³⁾
 - 최소한 일차적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의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는 밀수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FTA 체결국가가 늘어난다고 하여도 국가별 수급 상황에 따라 항상 FTA 국가에서만 금을 수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금에 대한 관세 면제는 수입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일조할 것임²⁴⁾

【제2안】 소득세 감면 혜택은 일몰 종료하고, 법인세와 관세 감면 혜택은 2년 일몰 연장하는 방안

-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이용실적은 그야말로 미미하며, 향후에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몰 종료
- 관세 감면 혜택의 연장은 제1안과 같은 논리에 의함
- 제1안과 제2안의 차이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 조항을 연장할 것인가의 문제임
- 법인세 감면 혜택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임
 - 그러나 현재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LS-Nikko나 아예 적격공급업체에서도 빠져있는 고려아연 등의 대형 공급업체(법인)에 유인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23) 관세청의 금지금 밀수 단속 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았으나, 이 통계는 실제로 밀수가 발생한 연도의 자료가 아니라 적발된 연도의 집계이며, 적발되지 않은 밀수도 있었을 것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음

24) 같은 금지금이라도 어느 나라에서 생산한 금지금인가에 따라 색깔이나 형태 등의 미세한 차이가 소비자들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선호의 차이는 비FTA국가로부터의 금 수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KRX에 따르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들 업체들도 참여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함
- 이러한 의사표현이 실제 참여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나, 한편으로 법인세 감면의 조세지출금액도 크지 않으므로²⁵⁾ 양성화에 필요한 시간을 연장해준다는 의미에서 고려할만한 옵션이라고 봄
- 현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법인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조특법」 제122조의4에서 금 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하여 현물시장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2021년 말까지 일몰이 연장되었음
 - 「조특법」 제122조의4에서 말하는 금 사업자는 「조특법」 제106조의4 제1항 제3호의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말함
 - 따라서 장내거래를 하는 금지금 사업자와 취급하는 상품이 다를 수 있음
 - 그러나 「조특법」 제127조 제4항에서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취급하면서 동시에 금지금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즉 한 사업자가 여러 가지 금 관련 상품을 취급하면서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를 할 경우 장외거래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연장된 반면, 장내거래에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 세제 유인에 따라 장내거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소득세 감면의 이용 실적은 매우 미미하고 앞으로의 양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법인들의 참여인 만큼 소득세 감면에 대한 일몰 적용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법인세 감면의 경우에는 현재 이용 실적은 크지 않으나, 앞으로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직 참여 여부에 있어서 불확실한 측면이 남아있기는 하나 2년 정도 더 연장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25) 2018년에 1억 4천만원 정도임

2. 맺는 말

- 제 V 장의 말미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5년의 기간이 현물시장의 양성화에 충분한 기간인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으나, 오랜 기간 장외 음성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던 금의 거래를 단기간에 양성화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장내 금 현물시장이 활성화된 나라는 중국과 터키 정도를 들 수 있다는 것은 장외에서도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굳이 장내거래를 추진하지 않고 있음

- 일단 우리나라는 거래 관행과 세무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장내거래를 통한 양성화 목표를 설정하였으므로 현 단계에서 동 목표를 폐기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됨
 - 세계적으로 금 현물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로는 중국과 터키를 들 수 있음
 - 중국은 법률에 의하여 금 현물거래는 상하이황금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음
 - 터키도 법률에 의하여 거래소 회원에게만 금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국가와 비교한다면 KRX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조건하에서 금 현물시장 양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종로’로 지칭되는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 여전히 장내거래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며, 장외거래는 장내거래와 일정 부분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장내거래를 활성화시킬 조치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협력할 유인이 적다고 할 수 있음
 - 만일 터키에 버금가는 정도의 양성화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현물시장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2년의 연장기간 동안 세제지원 강화를 포함한 거래제도 자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2년의 일몰 연장기간 중에 관련 부처와 전문가 등을 통하여 다양한 개선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참고할 때,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음

① 부가가치세의 조기 환급

- 소득세 감면은 현재도 이용도가 거의 없으며, 앞으로도 법인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보다는 부가가치세의 조기 환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세제지원 강화방안이 될 것임
- 제 V 장 4절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장외거래에서는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관리하는 신한은행에서 바로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는 반면, KRX 금시장에서 장내거래 시에는 바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환급이 불가하여 장내외 거래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
- 최소한 장외 인출로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즉시 환급이 이루어지게 하고, 입고된 금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가능한 매입세액 환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② 24시간 거래 제도의 도입

- 24시간 거래 제도의 도입으로 해외 시장과의 차익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③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의 참여 유도

- 중국은 은행이 상하이황금거래소의 주요 회원임
-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게 되면 거래의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상품거래소, '12년 1월 금 거래소부터 도입한다 - 상품(금) 거래소 도입 방안 확정·발표」, 보도자료, 2010. 6. 23.

_____,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 보도자료, 2013. 7. 22.

정재호, 『금 지금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7.

한국거래소, 「KRX 금 시장 5주년 성과 및 향후 운영 방향」, 보도자료, 2019. 3. 22.

홍범교·김재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귀금속사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조폐공사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1.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

미국 상품거래위원회(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https://www.cftc.gov/>

미래에셋자산운용, <https://investments.miraeasset.com/>

블룸버그(Bloomberg), www.bloomberg.com/asia

삼성자산운용, <http://www.samsungfund.com/main.action>

상하이황금거래소(Shanghai Gold Exchange), <https://sge.com.cn/>

_____, <https://www.en.sge.com.cn/>

세계금위원회(World Gold Council), <https://www.gold.org/goldhub/>

_____, <https://www.gold.org/>

신한은행, <https://www.shinhan.com/index.jsp>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https://www.ecb.europa.eu/>

이스탄불 증권거래소(BORSA iSTANBUL), <https://www.borsaistanbul.com/>

터키 보르사 이스탄불(Borsa Istanbul), <https://www.borsaistanbul.com/>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한국투자신탁운용, <http://www.kim.co.kr/>

Buy Swiss Gold, <https://www.buyswissgold.net/>

IBK기업은행, <https://www.ibk.co.kr/>

ICE 벤치마크 관리국(ICE Benchmark Administration), <https://www.theice.com/iba>

IMF, www.imf.org

KB국민은행, <https://www.kbstar.com/>

부 록



<부표 1> KRX 금 시장 규정 및 세칙개정 연혁

개정일	구분	배경	내용
2014. 3. 11	규정	규정 제정	
2014. 3. 17	세칙	세칙 제정	
2014. 4. 15	세칙	금지금제련업자의 지정요건에 관한 구체적 세부기준 마련	기술요건 평가 면제기준 설정, 지정요건 유지 확인을 위한 기준 마련
2014. 7. 22	세칙	개인정보수집 관련 조문을 정비	회원가입신청 서류상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삭제, 위탁자의 정보제공 동의 조항 삭제
2014. 8. 13	규정	실물사업자의 시장 참여 촉진 및 거래 활성화 유도	금지금 공급사업자 자격범위 확대, 협의대량매매 도입
2014. 9. 22	세칙	적격금지금유통업자 도입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적격금지금유통업자 지정 및 유지조건, 적격금지금유통업자의 금지금 입치방법, 수입금브랜드 확대
2014. 12. 10	세칙	예결원 본사이전에 따른 금지금 반환·인출 장소 주소 변경	금지금 반환·인출 장소 주소변경 및 인용 조문 정비
2015. 3. 20	규정	정부가 증권회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개편	영업용순자본비율 개편사항 반영, 적격금지금 수입업자의 자기자본요건 완화
2015. 3. 20	세칙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영업용순자본비율에서 순자본비율로 변경	금융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에서 순자본비율로 변경 금지금 공급사업자의 재무상황관련서류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015. 5. 13	규정	적격금지금유통업자의 금지금 입치 활성화	적격금지금 유통업자지정요건 중 장외매입계약요건 삭제, 적격 금지금 유통업자의 금지금 입치방법 개선, 매매대상 국내 금 지정 근거 마련, 사업장평가 예외적 면제 근거 마련
2015. 5. 29	세칙	업무규정 위임사항을 정하고 수입금 브랜드 정비	적격금지금유통업자의 금 지금 입치방법 개선, 금지금 공급사업자의 입치담당자 사전 등록, 적격수입금 브랜드 정비
2015. 7. 27	규정	시장참여자의 거래기회 확대, 거래편의 제고, 시장활성화 도모	매매거래시간 변경, 임의종료제도 도입, 계좌설정계약 체결방법 개선, 적격금지금 공급사업자지정요건완화, 협의대량매매에 대한 실시간별결제도입
2015. 7. 31	세칙	종가 단일가호가 접수시간 변경, 임의종료 및 협의대량매매 제도의 시행	장종료 시의 단일가호가접수시간 단축, 임의종료제도 발동기준 마련, 협의대량매매 신청·결제·인출순서 등 기준 마련, 금지금인출장소 추가

개정일	구분	배경	내용
2016. 1. 13	세칙	수입금 품질검사의 업무편의성 제고	품질검사 장소 변경
2016. 4. 22	규정	시장참가자의 참여저조를 완화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유동성 공급 거래계약요건 완화하여 거래편의성 제고, 금 시장활성화 도모	유동성공급자제도 도입, 협의대량매매 참여자 범위 확대 등
2016. 5. 26	규정	주식시장의 거래시간 연장(30분)에 따라 KRX 금 시장 거래시간도 30분 연장	매매거래시간을 현행 09:00~15:00에서 09:00~15:30으로 확대
2016. 6. 10	세칙	규정개정('16.4.22)에 따라 세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을 정비하고 규정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등을 반영	유동성공급자제도도입 및 협의대량매매 제도개선에 따른 호가 관련 조문 신설, 유동성공급자제도 도입에 따른 세칙신설, 협의대량매매가격범위 및 신청수량 확대, 수입금금지금 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정비, 국제 금 가격정의 신설 유동성공급계약내용신고서 신설
2016. 6. 28	세칙	규정개정('16.5.30)에 따라 관련 세칙을 개정함	매매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관련 세칙 변경
2016. 8. 23	규정	실물사업자회원의휴업·폐업신고요건을 금융투자업자회원에 대한 요건과 동일하게 함 협의대량매매의 참여범위가 금융투자업자까지 확대된 제도를 활성화	회원의 당연 탈퇴 요건 일원화, 협의대량매수계좌 폐지, 협의대량매매 결제방법 변경
2016. 9. 1	세칙	협의대량매매제도 개선과 관련한 규정개정('16.8.30)에 따른 세칙을 개정	협의대량매수계좌폐지에 따른 조항 삭제, 협의대량매매결제방식변경에 따른 조항 삭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 따른 문구 조정, 우선호가 정보의 공표범위 확대에 따른 문구 규정
2016. 11. 2	세칙	KRX 금 시장의 지속적 활성화 도모	국내금적격금지금리스트정비를 통해 매매대상금지금 범위 확대 당일입고규정을 익일까지 가능하도록 완화
2016. 12. 7	세칙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을 정비하여 금지금 입고를 원활히하고자 함	LBMA와 적격금지금리스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호명 조정
2017. 7. 25	세칙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을 정비하여 금지금 입고를 원활히하고자 함	수입금의 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호명의 금지금을 추가 반영

개정일	구분	배경	내용
2017. 8. 29	규정	미니금종목상장을 통해 소규모금 지금에 대한 수요창출 수입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	매매대상금지금 등에 100g종목 추 가, LBMA 인정 인수도적격금지금 인 수입금의 품질인증절차 개선
2017. 9. 15	세칙	인수도적격 수입금의 품질검사절 차 관련 운영 규정이 개정 됨에 따른 세칙 반영	100g종목 기준가격, ‘표본검사방법 의 품질검사’를 적용하지 않는 수 입금 요건 신설, 띠지 폐지
2018. 1. 15	세칙	100g종목 금 지금을 원활히 공급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세칙에 반영	품질인증기관을 상징하는 표식을 각인할 경우 품질인증기관이 제공 하는 금형 또는 위·변조방지표식 을 사용, 미니금종목금지금외관을 신설
2018. 10. 10	규정	KRX 금 시장 회원에 대한 조치유 예는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시 되지 않은 부분을 반영	KRX 금 시장의 재무요건 미달 회 원에 대한 조치 유예를 이사회 결 의사항으로 함
2018. 10. 12	세칙	LP에 대한 실적평가는 종목별 평 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거래가 부 진한 종목은 실효성이 낮음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실적평가 를 종목별에서 종목통합평가로 변경, 유동성공급회원 지원 금지급조항 에서 “유동성공급대상종목별로” 문 구삭제
2018. 12. 21	세칙	인수도적격 수입금에서 KRX 금 시장에 입고가능한 수입금 범위를 확대하여 금 시장 활성화를 유도	수입금 리스트에 금지금제련업자 명 또는 상호명을 추가 반영
2019. 4. 8	세칙	주식시장의 시가 단일가 호가 접 수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참여자의 혼동을 방지	시가 단일가 호가 접수시간 단축, 기타 조문 정비

자료: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